

4

분쟁의 발생과 해결(2)

- 정부와 주민간 분쟁 -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욕구 증대와 환경, 삶의 질 중시 등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발생·수집된 정부와 지역주민간 분쟁사례는 총 173건이며, 정부계층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민간 분쟁 44건(25.4%)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혹은 시행업자와 주민간 분쟁 129건(74.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쟁내용에 따라 지방행·재정분야와 지역개발분야의 분쟁발생비율이 약 3 : 97로 정부와 주민간 분쟁은 거의 대부분 지역개발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개발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상사업별로 쓰레기처리시설, 위험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혐오·기피시설 108건(64.7%), 지역개발사업 31건(18.6%), 도로 및 광역공급시설 17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발생사례 총 173건 가운데 65.3%인 113건이 해결사례이다.

정부와 주민간에는 시설입지 기피 및 입지반대와 관련한 분쟁이 압도적으로 높은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 입지기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상 입지선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적절한 보상, 건설·관리과정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가 분쟁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주민생활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있어 주민이 이해당사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둘째, 주민 및 지역보상제도의 개선에는 재정적 보상조치 외에 토지이용상 혜택, 주민취업 보장, 지역숙원사업 추진, 지역편익시설 개선 등 보상조치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협오시설 관련분쟁

쓰레기처리시설과 입지선정·관리단계의 주민참여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정부와 주민간 분쟁은 추진단계에 따라 시설입지의 선정과 계획수립단계, 시행단계, 그리고 운영단계에서의 분쟁으로 나뉘며, 주민참여방식이라 하더라도 단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주민참여 방식을 통해 해결된다. 이를테면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분쟁유형 가운데 춘천 혈동리 쓰레기매립장은 입지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지공모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 단계에서의 주민참여와 시설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시장관사의 시설내 입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시설운영단계의 기술적·환경적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와 아울러 주민협의체 및 환경감시단의 활용을 통해 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쓰레기처리시설의 입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상태에 놓여있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분쟁해결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시설입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과 혜택을 얻게 되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쓰레기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주요 발생원인은 시설입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우려와 기술적 불신, 그리고 지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들 수 있다. 춘천혈동리 쓰레기매립장 사례는 주민과의 협약 및 환경협약 체결과 시장관사의 매립장주변 이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기술적인 확신을 주는 동시에,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 및 관리관련 단계별 분쟁해결조치

단 계	주요 쟁점	분쟁해소를 위해 가능한 조치	분쟁해결 모범사례
입지선정 계획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피해우려 · 시설입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지가하락) · 의사결정에의 주민배제(비밀행정, 밀실행정) · 무조건 입지이전요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입지선정의 적정성 확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시설계획수립</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입지후보지 조사 (공도,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 광역시설계획 수립유도 (재정인센티브 제도, 비용 분담기준) · 주민보상기준 제시 · 주민정보공개 의무화 	춘천혈동리 쓰레기매립장, 군포쓰레기소각장, 음성-진천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불신 · 주민편의 및 지원사항 미흡 · 부실시공 우려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시설계획의 결정·고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시설의 착공·준공</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상 영향조사(주민협의체가 지정, 참여, 공개) · 주변영향지역의 설정(관할구역 내외의 직간접 영향권 설정) · 주민, 자치단체 협약체결 · 주민편의시설의 제공 (이주대책 수립, 주민지원기금 산정, 주변영향지역 지원) · 최저가 낙찰방식 활용 (부실시공 방지조치, 기술적 저감조치 활용) 	춘천혈동리 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안전사항불신 · 운영과정의 피해우려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시설의 운영·관리</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 주민감시요원 운영(주민음부즈맨제) · 운영과정의 공개의무화 	상계동 노원 자원회수시설

직접피해대상지역(시설입지로 부터 300~500m이내 지역)과 간접피해지역(시설입지로 부터 1~3km이내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함으로써 쓰레기처리 시설 입지분쟁을 해결하였다. 둘째, 공개적인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당해지역의 주민들이 알게될 경우 사업지연 및 분쟁발생을 우려하여 대부분 비밀리에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춘천 혈동리 쓰레기매립장이나 군포쓰레기소각장 사례를 비롯한 몇몇 사례들은 입지공모제 실시 등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회를 개방·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은 주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어, 초기단계에 공개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상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 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부분적으로는 사업의 시행시기를 지연시키는 역기능도 있지만, 입지선정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단계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협약서에 의거하여 일일이 주민들이 감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어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민요구에 충족되는 시설보완 공사를 실시하는 등 시설운영 자체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에따라 쓰레기처리시설의 계획수립단계에서 부터 시설입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차원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입지선정과정의 주민참여와 기술적 신뢰제공: 춘천 혈동리 쓰레기매립장 건설

1994년 춘천시는 삼천동 임시적치장을 비롯한 소규모 매립장을 전전하며 평균 4개월에 한 번씩 매립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포화상태에 이르자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있었다. 이에 춘천시는 석사동 애막골, 동산면 조양리 등을 매립장 부지로 선정·추진하였으나 번번히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1996년 5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건설계획이 무산되자 춘천시는 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환경연합, 경실련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쓰레기매립장 선정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발전기금 3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하였으며, 남산면 수동2리와 남면 한덕리 등 2개 지역이 후보지로 신청하였다. 춘천시는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제시된 12개소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1개 지역, 그리고 공모지역 2

입지후보지 선정절차 및 과정	
가. 입지후보지 대상: 15개 지역	(주민신청·제보 3개 지역, 용역업체 후보대상 12개지역)
나. 평가기준: 기준항목을 지형면, 수문지질면, 위치, 생태,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가중치를 채점하여 고득점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설정	
다.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6개지역 제외)	2차 (현장답사: 9개지역 답사)
	3차 (최종심사: 9개지역 심사)
라. 최적지 선정지역: 신동면 혈동리(1위), 남산면 수동2리(2위), 신동면 팔미2리(3위) 등 3개 지역을 본 회의에 상정, 신동면 혈동리가 최적지로 결정	

개소를 포함한 15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후보지 선정조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았다.

입지선정 1단계에서 후보지 가운데 경제성이 없거나 상수원 상류지역 등 토지이용상의 하자가 야기되는 6개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2단계는 9개소만이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제시되었으며, 지형, 수문지질, 위치, 생태, 기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과 현장답사에 의하여 3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제시되었다. 1996년 8월 이들 선정된 3개 지역 가운데 신동면 혈동리가 첫째, 편입토지의 98%가 사유지이고, 둘째, 침출수 처리를 매립지로부터 4km의 관로를 설치하면 하수처리장과 연계처

리가 가능하여 연계 처리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셋째, 폐기물운반 비용절감 등 입지적 이점을 지닌 것으로 판명되어 최적입지로 선정되었다. 신동면 혈동리가 최적입



춘천시 혈동리 쓰레기매립장 조감도

지로 선정됨에 따라 춘천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비공식적인 협상·설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6건에 이르는 주민요구지원사업의 시행을 수렴하고, 주민 요구대로 시장 관사와 관리동을 쓰레기매립장 인근 및 내부에 건설하겠

다고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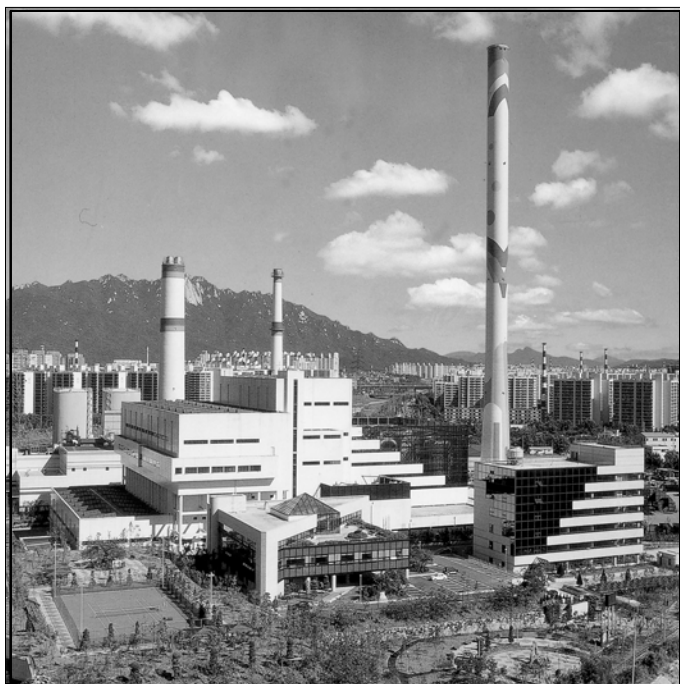
1996년 11월15일 ‘주민과의 협약 및 동의서’를 체결하여 마을발전기금 30억원을 비롯하여 마을버스 노선연장 등 마을지원사업을 약속하고, 현행 법에 기준한 매립장 설치기준 보다 훨씬 선진적인 설치기준에 맞추기 위해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 1997년 6월10일 착공, 1997년 12월에 1단계(10,800m²)가 준공되었으며, 1998년 1월부터 쓰레기매립을 시작하여 임시적치장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참여와 감사: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운영

1991년 서울시가 상계동 772번지를 쓰레기소각장으로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건설관련 서울시와 주민간의 분쟁이 가시화되었다. 이 지역은 상계동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이전부터 쓰레기집하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1989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빈번히 민원을 제기하였다.

1991년 9월 서울시는 쓰레기집하장으로 사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전면 변경하고, 동 부지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간집하장 건설관련 갈등은 해소되었으나 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라는 새로운 분쟁이슈가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노원소각장 건설 방침을 확정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소각장 입지지역 300m이내 지역에서의 소음과 악취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가 나오자 시설입지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300m이내에 입지한 중계2동 5,310세대 주민들은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 주민총회,

그리고 주민대표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각장 부지이전을 진정, 민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양해 공문의 발송과 주민들에게 기존 소각장 견학을 주선함으로써 주민설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지자 노원구는 관내 22개 동을 선정하여 각 동별 50명을 대상으로 ‘소각장 이전을 위한 적정부지에 대한 설문조사’



노원자원회수시설

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자 1,100명 가운데 99.2%(1,092명)가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97%(1,061명)가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 후보지로 제시된 3개의 후보지 (제1후보자: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제2후보자: 노원구 상계동 산5일대, 제3후보자: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가운데 거주민이 적어 민원발생 소지가 비교적 적은 제3후보지를 이전 적지로 할 것과 용량을 축소하여 노원구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지이전에 대하여 “현재의 부지(노원구 상계동 772번지)가 최적이고, 이전할 경우에 또 다른 민

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청원심사 위원회를 거친 끝에, 1996년 6월10일 서울시의회 생활환경 위원회는 노원구 소각장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에서 안전을 전원일치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소각장 부지이전 건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주민들의 부지이전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주민들은 1996년 6월18일 노원구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쓰레기 시책을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전환, 상계동 소각시설의 규모 축소, 그리고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상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구의회 설명회,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면담, 소각장 착공을 위한 토론회 등 주민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격렬했던 주민운동이 점차 협상단계로 접어 들었다.

1993년 8월30일 소각장시설 공사가 착공되면서 분쟁의 주요이슈는 소각장 부지이전에서 소각시설의 기술적 안전성과 계획규모의 과다성 시비로 전환되었다. 당초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600톤/일 규모로 설계·발주된 계획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와 시위로 처리구역을 노원구로 한정하고, 시설규모도 800톤/일(당시 노원구의 쓰레기발생량 340톤/일)로 변경하였다. 1996년 4월 소각장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주민협의체의 반입 반대로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하지 못하고 당초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1996년 9월30일 준공하였다. 소각장 완공이후 1996년 6월4일에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시운전을 위한쓰레기반입 협상결과에 따라 17건의 주민요구를 수용하고 서울시, 노원구청과 「임시 주민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에 의거하여 1996년 9월16일 시운전 기간중의 쓰레

기 반입에 합의하고 생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반입하였다. 주민협의체 감시하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주민요구치 $0.1\text{ng}/\text{m}^3$ 을 넘는 $0.106\text{ng}/\text{m}^3$ 이 나왔다. 1997년 1월 주민협의체는 다이옥신 시험결과에 따른 대책 회의를 열어 소각장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보완공사 이후에 재가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이옥신 농도가 $0.1\text{ng}/\text{m}^3$ 은 넘었으나 $0.106\text{ng}/\text{m}^3$ 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므로 소각을 계속하면서 시설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997년 상반기 중에 시설 보완을 완료하며 일시 소각은 중단 하되 쓰레기는 계속 반입하며, 약 83억이 소요되는 시설보완 공사를 하여 완료시까지 가동을 중단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주민지원기금 사용문제, 운영협약, 가동조건 등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대체로 양 자간의 협조분위기와 신뢰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활용,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조정, 타 구 쓰레기 반입시 주민협의체 배제, 소각장의 자치구 이전에 관한 서울시 조례개정 입법화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새로운 분쟁발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수처리시설과 주민대화 및 기술적 신뢰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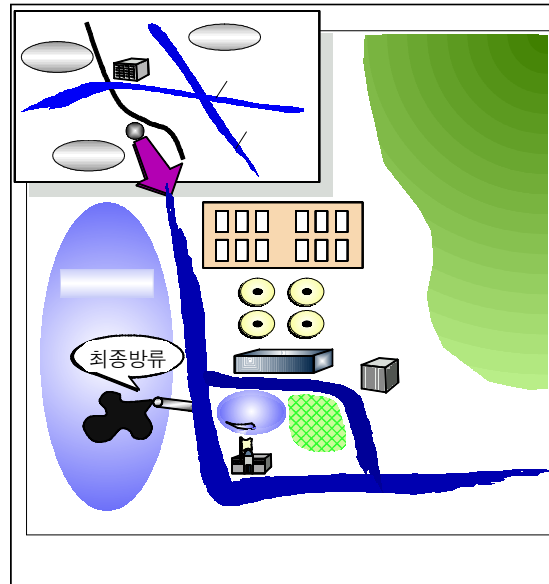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 건설관련 분쟁은 행정적인 절차와 지역주민의 이익제기 및 설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이다. 즉 도시계획결정 공람과정에 이익이 제기되었으나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지속됨에 따라 시정 운영에 있어서 건설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피해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곡하수처리장 분쟁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에 이르게 된 관건은 첫째, 시장의 공개행정에 대한 노력과 전략 제시이다. 즉 지역주민 전체와의 4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대화와 설득과정이다. 1~2차례 주민대표와 대화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가능하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양자간의 의사전달상의 왜곡여지를 최소화하였다. 둘째, 주민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시장은 환경적인 위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기술적인 측면의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관사의 처리장내 입지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요구되었던 주민요구사항과 약속사항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 공개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요구사항을 행정 문서화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에 빠져있는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게 되었다. 셋째,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및 제공이다. 주민들이 처리장 입지를 반대한 큰 이유의 하나인지가하락과 재산권 침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역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과 버스노선 연장운행, 언덕 설치를 통해 마을과 처리장의 분리설계, 환경시범적 자연학습장 설치와 부곡 철도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마을 조성, 왕궁저수지 운영권 등 적극적인 유인책의 제공과 환경친화적인 사업개발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 분쟁해결사례에서 지역주민들의 설득을 통한 해결에 이르

는데 있어서 용이했던 점은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궁극적으로 왕궁저수지의 정화를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되었다는 점이 분쟁해결에 이르는 협상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대화와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과의 신뢰구축: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

1996년 5월 경기도 의왕시는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왕송저수지와 황구지천의 수질보전을 통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월암동 568번지 일원에 10천톤/일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지역은 1991년 4월4

일 건설교통부에서 인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1991년 9월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계획의 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었다. 1994년 11월부터 기본설계를 시행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 1995년 8월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1995년 6월30일부터 1996년 2월16일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였다. 1996년 2월 2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용지보상 작업과 더불어 1996년 3월14일부터 4월8일에 거쳐 실시설계 심의가 있었다.



의왕부곡하수처리장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설 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다.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사유는 첫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냄새가 많이 나는 혐오시설이며, 둘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건설하게 될 경우 지가하락으로 재산손실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월암동 14통 잿말부락 47세대 주민들은 1997년 5월6일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의왕시장은 사업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하여 설득을 하였다. 시장과 주민과의 제1차 대화는 1997년 5월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민 39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민들은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인해 악취가 예상되므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의 위치변경, 둘째, 그린벨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처리장 건설은 지가인하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건설반대, 셋째, 잿말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연장운행 희망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의왕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계획부지는 입지·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이므로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 시설입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전국 최고의 시범하수처리장으로 건설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위해 시장관사를 신축하여 시장이 직접 거주하고, 둘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철도박물관을 연계하여 생태자연 학습공원 조성과 저수지 주변개발 등 잿말부락을 관광마을로 육성하며, 셋째, 부곡~수원간 도로를 우선 건설하여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넷째, 시내버스가 마을에 운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997년 7월19일 개최된 시장과 주민과의 2차면담에서 주민대표들은 첫째,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냄새나는 마을로 인식되어 손해가 우려되니 북쪽으로 옮겨 설치하여 주고 현 위치에 설치시에는 시설을 지하화하고, 둘째,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왕송저수지 유료낙시터 운영권을 마을주민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시장은 여전히 하수처리장의 위치변경은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지하화 방안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므로 잉여재원을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악취와 관련해서 처리장내에 충분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장 인근에 공원을 만들고 부락사이에 언덕을 설치하여 차단하고, 시장관사를 지어 시장이 기거기로 약속함으로써 기술적인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첫째, 도로를 개설하고, 둘째, 자연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고, 셋째, 낙시터 운영권이 현재 수화농조가 갖고 있으므로 수화농조와 행정적으로 최대한의 협의를 추진하여 운영권을 마을에 주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1차 대화에 대한 시장답변이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시장과 주민과의 3차대화는 1997년 7월27일 잿말부락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 2차 주민대표자와의 면담결과를 주민전체에 확인시켜 해결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면담에서도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부곡인근인 장안마을로 옮겨줄 것과 하수처리장이 설치 안되어도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리장이 들어온다면 마을에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의왕시장은 처리장의 입지변경과 관련하여 하수는

최종방류구에 설치해야 하며, 장안마을에 설치하는 경우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월암리에 설치하는 경우는 마을에서 보이지도 않고 가장 경제적이라는 점을 들어 처리장의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마을에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처리장이 설치되는 경우에 마을에 돌아오는 혜택은 첫째, 도로개설과 시내버스의 연장운행으로 마을의 교통편의를 가져올 수 있고, 둘째,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처리장을 개방함으로써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고, 셋째, 처리장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도록 언덕을 쌓고, 넷째, 왕송저수지의 낚시터 운영권을 마을에서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몇차례의 면담과정에 걸쳐 이루어진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정식(행정문서화)으로 발송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몇차례에 걸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약화되었으며, 1997년 10월18일 시장과 주민과의 4차 대화가 시장, 주민대표, 토지평가사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잿말부락의 마을회관에서 있었다. 이 대화에서 의왕시는 감정평가기법에 대한 설명과 하수처리장 건설입지와 관련하여 주변개발사업을 설명하고, 잿말부락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잿말부락 보상차원의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잿말부락의 발전을 위해 근린공원 조성, 부곡수원간 도로의 조기개설, 공영차고지 건설로 노선버스 운영, 주민복지 및 편익을 위한 마을회관 증축 등의 사업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한 악취와 혐오시설 입지기피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최종처리수 방류이전에 연못을 설치하여 물고기기를

사육하고, 자연학습공원내 습지를 통한 탈인 탈질소 제거 3차 처리방식을 도입, 둘째, 언덕을 조성하여 그 위에 차폐식수하여 하수처리장이 부락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며, 셋째, 처리장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지내에 시장관사 신축, 넷째, 하수처리장 건축물의 미관 설계, 다섯째,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배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홍보교육관의 설치 등이 협의사항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주변지가 하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 부곡동 공영 차고지 건설공사, 마을회관 건축공사 등 총20,688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주었다. 아울러 지역이미지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에 관한 명칭을 공모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감독관으로 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이 준공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기회와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였다.

위험·기피시설과 주민보상·설득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은 대부분 여러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분쟁의 해결이 곤란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민과의 분쟁이유는 입지기피나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절대수의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이러한 피해가 보전되거나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분쟁을 해결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와 주민간 분쟁이 보상방식을 병행하여 해결되었으나, 여기서는 특히 보상이 분쟁해결에 주도적인 계기로 작용한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주민보상과 설득을 통한 위험시설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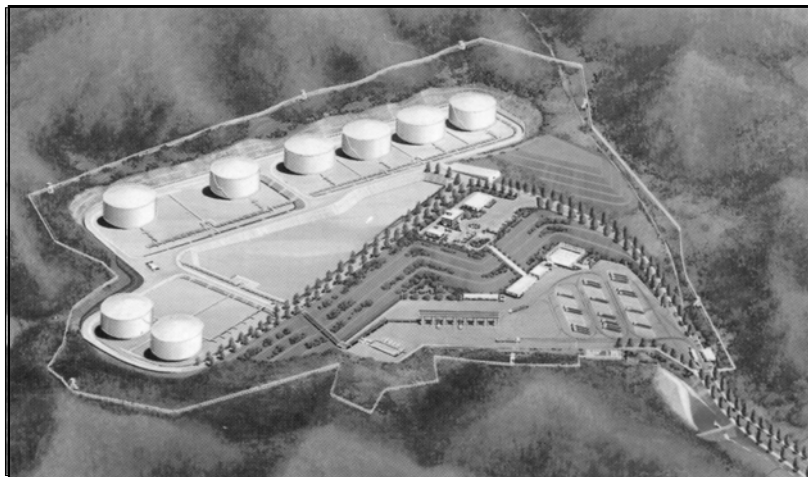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정부석유비축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서남권지역(광주·전남·전북)에 석유류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6조2(석유저장 및 비축의무부과)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공공시설 등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1월 곡성군 검면 괴정리 600번지의 175필지 388,480㎡에 석유비축기지의 입지승인에 따른 협의요청을 곡성군에 제출하였다. 군청 관련공무원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994년 3월 곡성군은 공공시설 입지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동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994년 9월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입지승인 통보를 받았다.

1995년말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사업개발행위 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와 함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1996년 2월 비축기지 입지승인 부지와 800m 떨어진 삼기면 소재지 일부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석유비축기지가 건설되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첫째, 입지승인시까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둘째, 비축기지가 유치되면 이슬이 안내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기름탱크가 폭발하면 2km반경까지 불바다가 되며 기름이 유출되면 토양은 물론 삼기천, 섬진강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하여 주변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비축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사업도 필요없고 무조건 입지승인 취소나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곡성군은 첫째,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든 인·허가는 법률에 따라 집행되나 비축기지 문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삼기면과 검면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주민대표기관인 군의회도 설명하였으며, 용지보상 설명회시에도 겸면 회의실에서 주민 3차 설명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였다. 둘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주민, 의회, 군청, 석유개발공사와 함께 국내 유사시설인 대전, 서울, 울산, 용인 등 지역을 4회에 걸쳐 현지 답사하여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서울과 지방대학 환경공학박사 4명에게 수질, 대기, 안전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의뢰하였다. 의뢰 결과, 비축기지 건설은 이슬과는 무관하고, 저장탱크가 파손되더라도 1, 2차 방유제 시설로 안전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도 소방설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초기에 진화될 뿐만 아니라 폭발은 일어나지 않고 10m이내로 분사되어 연소만 된다는 점, 그리고 수질 오염문제도 탱크가 지상에 설치됨으로써 토양에 스며들지 않으며, 방유제내에서 직접 송유관으로 이송되어 외부에 기름유출이 전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셋째, 비축기지 건설과 관련된 삼기면 주민의 경우 어떠한 보상이나 사업도 필요 없으며, 입지승인 취소나 이주 대책만을 세워달라고



곡성 석유비축기지 조감도

주장한데 대하여 비축기지는 1998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1996년 10월 현재 토목공사중에 있으며 운영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주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축기지 건설과 관련 한국석유개발공사 측은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문제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라는 점과 다만, 운영과정상 주민생존권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주대책을 세우고 또한 농사를 망치면 완전보상해주겠다는 각서를 공증”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왔다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어떠한 보상도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곡성군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주민들을 이해·설득하였다. 이후에도 주민들이 8회에 걸친 집단시위와 수차례에 걸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대표, 한국석유개발공사, 군청 관계공무원이 석유비축기지 기설치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과 주민대표와의 21차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주민대표, 한국석유개발공사, 곡성군수 및 삼기면장, 겸면장의 공동명의로 주민복지기금으로 양개 면에 각각 550백만원의 보상과 피해발생 및 안전성 문제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1997년 4월18일 작성 공증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이 완전 해소되었다.

주민설득과 정신병원의 설립

해남군 신혜정신요양원 대표는 1996년 3월 지역내에 정신질환자 490명을 요양할 수 있는 신혜정신요양원이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에 그치고 있어 환자치료 시설인 정신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신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 53외 7필지의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하였다.

정신병원 건립을 위해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산53외 7필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과 농지전용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정신병원이 혐오시설일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건립을 반대하였다.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첫째, 정신병원 인근 주변의 논에서 생산하는 쌀 판매시 지역 이미지 손상으로 판매부진 등 피해가 우려되며, 둘째, 산을 개발하게 되면 홍수와 한발의 위험이 있으며, 셋째, 정신분열증환자 탈출시 민가침입으로 인한 위험소지가 상존하며, 넷째, 대형관정 개발시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이 우려되고 다섯째, 폐수 및 오물냄새와 식수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장기간 대치상태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주장에 따라 해남군이 1996년 3월16일 정신병원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신혜정신요양원 대표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996년 6월11일 전남행심 '96-34호로 「해남군의 산림형질 변경 및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인용)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였다.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에 텐트를 치고 공사중지 요구시위를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공사중지 시위에 대하여 신혜정신요양원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신병원을 혐오시설 입지반대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으며, 정신병원 건립은 주민 의료혜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복지사업일 뿐만 아니라 산림형질 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건축허가까지 취득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되, 병원건립이 완료될 경우 인근주민들을 우선 고용하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 하는 쌀을 사주기로 하며 폐수배출시설 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득하였다. 1996년 10월말 옥천면 장 주재 하에 신혜정신요양원 대표와 옥천면 마을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병원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8년 4월22일전라남도지사로부터 혜민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다.

개발과 환경보전 분쟁

지방자치와 더불어 국내외 여건변화는 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가치에 대한 교량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기존의 개발우위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환경, 삶의 질 등 쾌적성이 지역의 우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역할 증대는 이러한 시대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양상에 있어서도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으로 인한 분쟁이 증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는 갯벌이나 갈대밭 등 자연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강화 석모도 화력발전소 건설과 갯벌 등 지역환경보전을 둘러싼 한전과 지역주민의 갈등, 순천만 갈대밭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갈등, 골프장개발을 둘러싼 시행업체와 지역주민의 갈등사례 등이 있다. 이들 분쟁유형은 가치관의 전환 과정에서 가치관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며,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해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에 입각한 다양한 개발기법의 도입이 아울러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개발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환경보전운동

1996년말 한국전력은 장기전력수급계획(1995)에 의거하여 LNG복합화력발전소의 입지를 물색하던 중 강화도 석모도를 최적지로 삼아 국내최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점 세부조사를 실시하였다. 1996년 10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석모도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12월16일 인천환경연합은 강화

발전연구회에 석모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왔다. 이에대해 1996년 12월30일 화력발전소의 입지가 예상되는 석모도 보문사에서 보문사 스님, 주민, 환경연합 관련자, 그리고 영흥도 반대투쟁위원회 관련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찬반 논의와 화력발전소의 입지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영흥도 주민들의 경험을 청취하였다.



전남 순천만 갈대밭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참여주체들이 화력발전소의 입지를 반대한 이유는 입장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우선 발전소 입지예상지역에서 4km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보문사는 발전소의 입지가 절의 풍수에 영향을 미쳐 기도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신도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현재 조계종관련 절 가운데 재정수입 3위를 차지하는 보문사에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환경연합과 강화발전연구회는 발전소의 입지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 즉 수온상승으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와 국내 유일의 갯벌에 대한 피해를 입지반대의 큰 이유로 제기하였다. 반면, 삼산면 지역주민들은 약80여 가구로 어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1997년 1월30일 국회의원과 군수를 초청하여 개최된 토론회에서 보문사 스님과 향토문화연구회 간사가 화력발전소에 대해 질문하였고, 여기서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여 화력발전소의 용량이 720만 킬로와트(9기)가 아닌 1200만 킬로와트(12기)로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후 당시 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인 영흥도 주민의 실제 경험과 에너지관련 전문가초청 논의를 통해 화력발전소의 위해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발전소건설 백지화를 위한 집단적인 연대시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월에 들어서면서 가두전단 배포, 주변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방문 및 풍선날리기 행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화력발전소의 입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강화지역내 43개 사회단체가 모여 ‘석모도화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강화군 화력발전소 반대를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던 사회단체연합이 강화군민에게 제시한 자료에서는 현재 석모도에 계획되어 있는 1200만 킬로와트의 LNG복합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총전기생산력의 40%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주민들이 입게 될 이익과 손해를 알려주었다. 석모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으로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다리건설, 1만명 정도의 인구유입,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 연간 15억~25억원 규모이다. 한편, 주민들이 입게 될 손해는 대기오염, 바다오염, 고압전선에 의한 피해, LNG폭발 위험성을 들 수 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 오존증가, 온실효과를, 바다오염은 수온상승(7°C)으로 어장 황폐화와 냉각수 피해초래를, 고압전선 피해는

고압선이 강화도를 통과하여 서울이나 인천으로 연결되는 점 등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고압선 근처는 임신도 어렵고 기형아가 많이 생기며 고혈압, 백혈병 등이 많이 생겨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영광원전의 주변 땅값은 5배로 폭락했으며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는 점 등을 예시하였다.

이와같이 주민들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자 강화군은 1997년 3월24일 한국전력에 화력발전소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한국전력은 1995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 계획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용량은 4,050MW(450MW× 9기)였으나 발전설비 계획 조정으로 신규설비 용량을 450MW로 대폭 축소 조정하였으며, 현재는 발전설비 계획 조정으로 LNG복합화력의 신규입지 확보계획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4월2일에는 한전의 입지조사부장이 직접 강화군을 방문하여 발전소 백지화를 발표하였다.

1997년 6월 강화군은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석도모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한국전력의 계획이 완전 백지화되었는지? 당초 계획설비 규모인 7,200MW를 축소 조정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인지?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 이후 발전소의 건설부지로 건설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한국전력은 “석도모는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한전에서 조사한 LNG복합화력 후보지점중의 한 지점이며, 현재 발전소 건설 대상지는 설비 용량 축소조정을 검토중이므로 미확정 상태”임을 밝혔다. 그리고 1997년 8월 강화군은 한국전력과의 공문내용을 사회단체연합에 공문형태로 발송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발전소 백지화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한국전력의 석모도 화력발전소 백지화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강화도 발전소건설 반대를 위한 강화지역 시민연대는 석모도가 언젠가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를 불식시키고 강화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화지역을 랍사사이트로 지정하든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강화지역내 화력발전소 입지에 대한 논의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였다. 그리고 석모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이어 강화군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제시한 갯벌매립계획인 화북프로젝트(3만평), 동검도 일원의 대단위 위락시설 건설, 내리와 외포지구의 매립계획(17만평), 고천지구의 골프장과 스키장 등 대규모 레저시설 건설(121만평)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강화군이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이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녹색연합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화도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청사진인 『 강화도 프로젝트 』



강화도 갯벌에서 서식하는 저어새

구상을 녹색연합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이들 연구는 7개월여에 걸쳐서 20여회가 넘는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강화개발 방향을 수렴하고, 11월에는 강화지역과 유사한 지역인 일본의 홋카이도를 군수, 지역주민, 시민연대 참여자 등이 자비를 들여 방문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강화발전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도 가졌다.

강화 그린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지역환경 및 지역경제발전 연구보고서로서 건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내용은 강화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산 및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강화도에 적합한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근간은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지방재정확충 사업과 문화재 보호

경주 경마장건설 계획은 1992년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주시는 경마장을 건설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내 고용증대, 관광진흥 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1994년경주 경마장 건설이 문화체육부로부터 확정 발표되자 경주시는 기존의 보문관광단지과 연계되고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용이한 천북면 물천리, 손곡동 일원에 약29만평을 경마장 부지로 확정하였다. 경마장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자 고고학회를 비롯한 16개 학술단체는 경주 경마장 부지로 결정된

경주시 손곡동, 천북면 물천리 일원은 신라시대의 가마터 등 중요문화재가 많은 유적지로서 경마장 건설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라 천년고도의 이미지와 사행성이 강한 경마장은 전혀 맞지 않으며, 도시 전체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길이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경주에 경마장 건설을 시행하는 것은 경주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관련기관에 성명서를 공문으로 보내어 촉구하였다. 문화체육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경주시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것을 일부의 문화재를 빌미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경마장 입지예정지역은 경주시의 외곽지역으로 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희박하고, 일부분 확인되는 문화재는 발굴조사후 기록으로 보존하고, 부득이 보존하여야 할 유적이 발견되면 경마장 부지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존토록 조치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주 경마장 건설 예정부지에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학계의 주장에 따라 경마장 부지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분포범위를 확인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1995년 8월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 가마터 등 총106개소의 유구와 53,599평의 유적 분포 범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적 분포범위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3개 기관에서 1996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발굴허가 지연으로 전체공정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며, 사업중단에 따른 한국마사회와 경주시의 기투자비 약284억원여가 사장될 상황이다. 또한 마권세가 지방세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 경마장건설 분쟁에 따른 심각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경주경마장 건설 개요 및 추진경위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손곡동 일원(보문유원지 인접) - 규모: 965천㎡, 주로 3면, 수용인원 10,000명(6,000석) - 사업기간: 1994~2002(당초 1999년 개장목표) - 사업비: 1,371억원(기투자 221.5억원) - 시행자: 한국마사회 	
<p>■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 2. 경마장 건설예정지 확정 1994. 6.28 경주경마장 건설사업 시행허가(문화체육부) 1994. 9. 경마장 부지 지표조사(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3. 경마장 용지 및 지장물 보상시행 1995. 3.18 한국고고학회 등 16개 학술단체 경마장 건설 반대 세미나 개최(세종문화회관) 1995. 6. 1 문화재 시굴조사(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8. 1 경마장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경주시) 1996. 6.15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경주문화재연구소) 1996. 6.28 교통영향평가 완료(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996.11.20 발굴조사 착수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경주시는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은 현장을 보존하고, 일반 유적은 부지내 녹지공간에 이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동 부지 내에 발굴조사 유적전시관 건립과 병행하여 경주경마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며, 경마장 건설을 고도 경주의 이미지와 최대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경주 경마장 건설 분쟁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확충과 문화재 보호라는 두가지 가치간의 상충에 따른 분쟁유형으로서, 향후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통한 분쟁 해결모색이 요구된다.

분쟁해결을 위한 제언

민선자치 이후 사회전반적인 분권화와 다원화, 행정수요 증대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분쟁이 양적으로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쟁은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합의를 가져오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조정이 되지않는 경우 개인과 집단간의 불필요한 대립의 증대로 막대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지역개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성격상 주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국가·지역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의 지속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21세기의 성숙한 지방자치와 경쟁력있는 국토기반 조성,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행정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여기서는 분쟁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쟁은 개별 사례마다의 상이한 발생배경, 내용, 유발원인을 지니고 있으므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사례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분쟁의 해결방안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이나 분쟁 관리에 있어 하나의 자료와 지침으로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정책입안 부서나 일선 자치단체의 실무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단계별 전략

분쟁은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상태가 가시화되어 목표달성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우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분쟁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된 단계를 의미하므로,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Godschalk(1992)에 따르면 분쟁은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분쟁의 발단은 문제화 단계(issues)이다. 이 단계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문제의식과 반응의 초기단계로서, 대부분 입안과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도가 미확정적이거나 협상여지가 크기 때문에 상호 의견대립의 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며, 우호적인 접촉이나 대화로 인한 조정이 가능하다. 문제화 단계에서 의견조정은 주로 실무급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대화 통로는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협의체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합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는 문제화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의 상호의견과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행정,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확대, 민주적인 의사결정 관행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업무의 추진은 많은 경우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인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로 인하여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향수하는가? 그리고 이들간의 이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다.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둘째, 문제화 단계에서 의견의 불일치 및 갈등상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간에 대립이 심화되어 협상이나 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분쟁이 가시화되는 단계(dispute)로 진전된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이러한 문제화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곧바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문제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쟁가시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이것은 대부분 밀실행정, 즉 투명성이 결여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화단계를 거치지 않고 분쟁이 가시화되면 행정비용이나 사회적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보다는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진지한 자세가 결과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 비록 문제화단계를 거쳐 분쟁이 가시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3자에게 화해(facilitation), 중재(mediation), 조정 또는 재정(arbitration) 등을 위임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타협, 조정 및 상호수용이 가능한 대안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지역사회지도자 등 중립적이고 신망있는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사자간의 갈등의 해소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식 및 비공식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한 채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교착상태(impasse)는 제3자에 의한 개입에 의해서도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양 자간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게 되는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강행, 포기 또는 사법기관에의 의존여부를 결정한다. 준사법적 또는 사법적인 판단은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청문회나 재판절차를 통한 제3자의 강제력이 있는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결정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착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해소가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이라기 보다는 분쟁의 와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강제적 분쟁종결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과 수단

분쟁조정유형	분쟁예방	분쟁해결	
		분쟁해소	분쟁와해
분쟁조정방법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갈등유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갈등해소</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분쟁 발생</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당사자 자율합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제3자 조정·중재합의</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분쟁 지속</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강제 조정</div> </div>
분쟁조정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제도 확대 • 지방자치단체협동 조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합의 및 조정 체계 구축 • 독립적 분쟁조정제도 확립 • 자율적 순응수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관련 사법 및 준사법 제도정비 • 강제적 수용제도 확립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체별 전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거부 그리고 업무영역에 있어 책임과 권한의 배분 등 권한분쟁적 성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관련 분쟁, 인천신공항 진입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분쟁과 검단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관련과 관련한 인천시와 농림부, 산림청의 마찰, 다대포지방공단 지정관련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의 의견마찰, 화천군의 파로호관광단지 조성예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거부 분쟁 등이 있다.

이와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계획단계에서 지원규모, 시기 등에 대하여 양자간이 사전협의 및 개발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이후 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토록 한다. ii) 국가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자치단체의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발전시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이들이 입지하는 지역과 주민에게는 재산, 환경 및 생활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iii)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사업의 효과가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토지매수 촉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사한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안의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간 분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과 지역간 연계도로, 상수도 등 광역공급시설, 그리고 동일유역내에서 상이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상·하류지역간의 수질보전을 둘러싼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분쟁의 속성을 보면 문제의 해결을 주변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자기지역 중심으로 해결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나 구분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주변지역과 기능적 연계성과 상관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i) 지역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관행의 확립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도입 활성화가 요구된다. 즉 지역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벗어나 주변지역과 공동으로 협력하고자하는 의지와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개별도시와 지역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동적 노력과 계획수립에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고 등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ii)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역간 사전협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지역개발분야의 자치단체 업무는 대부분 인근 자치단체와 연관된 업무이거나 그 영향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협의, 조정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미국의 지방정부 협회(Council of Governments)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 뿐만 아니라 공동문제에 대한 연구, 계획수립, 지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과 협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관계관까지 주민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상호 의견 교환 및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다.

협오 · 광역공급시설

쓰레기처리시설, 하·폐수처리장, 광역상·하수도, 도로, 광역시설의 입지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인 해소를 위하여 입안단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적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시 인접지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특정 협동계획제도의 활성화, 다양한 광역행정방식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정부간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인접지역간 공동 이용시설이나 인근지역의 시설입지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평부담원칙에 의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

하천관련 분쟁

하천관련 분쟁은 하천별 통합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하천의 이용·개발·관리에 따른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유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둘째, 사용자 또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운영비의 분담, 상수보호구역 지정 등 하천 수질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역보상 및 인센티브의 제공, 원수 비용의 현실화 및 지역배당제의 채택과 같은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관련 분쟁

지역개발사업 관련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업무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지방화 등 달라진 여건변화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합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기관 및 공사 등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계획입안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수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추진시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중앙관계 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기술적 지문을 받도록 하는 사전협의를 위한 채널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분쟁내용 유형별 개선방안

분쟁유형	개선방향	제도적 조치
광역시설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광역서비스 공급 및 시설관리체계 구축 ○ 지역간 공평부담원칙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사업의 법적 지위 부여 ·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의제 · 토지매수촉진제도 등 ○ 지역간 협동조직 구축 · 광역쓰레기, 폐기물, 하수처리시설의 건설·운영 조직구성 · 광역서비스 공급 위한 협동체계 ○ 광역공급처리 및 기피시설에 대한 공평부담 원칙과 기준의 설정 · 입지공모제, 비용분담제 등 경제원칙의 적용
하천관련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별 통합관리를 통한 사전협의 및 조정 ○ 수혜지역과 피해지역간 형평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별 통합관리제도 도입(river authority) · 하천유역 토지이용규제 ·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 사용자부담원칙의 도입으로 피해지역의 보상강화 · 상류지역 하수처리비용분담 · 상수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보상 · 물값 현실화 및 지역배당제 도입
지역개발사업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공동참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 토지이용 등 국토개발업무를 지방이양 확대 ○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보장제 · 사전업무 협의제 · 공동조사 및 개발제도 도입

정부와 주민간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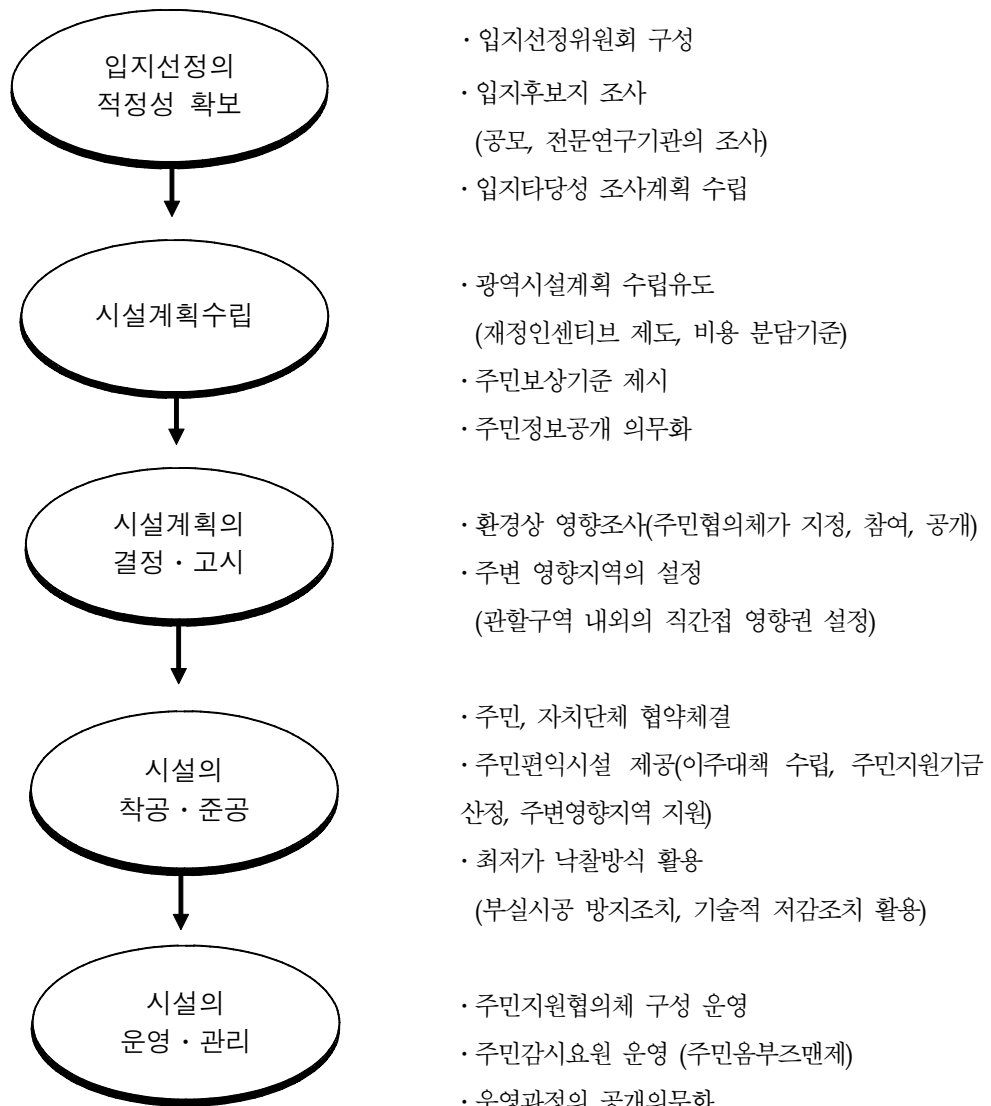
정부와 주민간 분쟁은 정부간 분쟁과 달리 쓰레기처리시설, 위험시설 등 혐오시설과 관련한 입지반대 분쟁이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와 주민간 분쟁은 시설입지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의식,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가 분쟁의 주요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따라 지역개발사업 관련 분쟁에서도 공단, 댐건설에 따른 보상불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 피해우려와 보상불만이 분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유발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부와 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i)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 특히 갈등요인이 있는 혐오시설의 입지 등에 대하여는 계획 및 입안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개발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주민참여제도는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시의 공고, 공람, 공청회 등 일부에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입안,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방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 주민이 이해당사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이나 광역시설의 입지분쟁의 경우, 주민투표 및 경매방식에 의한 자발적 입지선정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공동이용 시설의 입지나 환경관련 분쟁의 경우, 입지 선정 및 추진여부, 분쟁조정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주민투표제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ii) 주민과의 갈등해소와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이해의 조정을 위한 수단 및 조치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주민보상과 지역보상제도의 개선에는 재정적 보상

조치 외에 토지이용상 혜택 부여, 주민취업 보장, 지역숙원사업의 추진, 지역편익시설의 개선 등 유인패키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혐오 및 위험시설의 입지로 지역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정적인 보상조치와 함께 설계에 따른 시공보장,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조치를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혐오시설 등의 공사비 계상에 지역주민의 상대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iii) 주민과의 갈등과 분쟁은 많은 경우 상호불신과 오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의 생산·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지역적인 영향이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시에는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사업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위한 독일의 'Info-Box'나 사업추진에 관련된 주민고충처리제도, ombudsman제의 운영이 검토될 수 있다. iv) 마지막으로 환경 및 시민단체와의 공익가치분쟁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보다는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 또는 환경단체를 참여시키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들이 지역분쟁의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상·입지기피분쟁

정부와 주민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고려되어야 부분은 시설입지나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여부이다. 보상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객관적인 피해산정 기준과 보상원칙의 제시, 그리고 정당한 집행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조치로는 피해산정 및 보상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을 장려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시설 등의 건설과 관리로 인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경제적 보상 외에 지역내 재산가치 증진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의 추진, 취업기회 제공, 기타 토지이용상 혜택부여 등 다양한 수단의 동원이 필요하다.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입안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계획수립 단계에는 입지선정위원회와 같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행관리단계에는 철저한 시공과 운영을 감시하는 주민 모니터링제, 주민 옴부즈맨제 등 직접적인 참여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민투표제는 비합리적인 분쟁행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유발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혐오시설의 입지에 대한 정부와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보상제의 도입을 통한 비용과 편익의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 증진이 필요하다. 그동안 입지 및 개발분쟁에서 개인의 재산적인 피해는 대부분 보상되어 왔으나 지역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이나 보전대책이



시설입지분쟁의 단계별 조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셋째, 입지기피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다양한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공과정의 기술개발, 신기술 도입 등 기술적인 조치 외에 주민감시제, 피해유발 우려에 대한 보험제도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신뢰성있는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회사가 건설에서부터 운영·관리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일괄 책임제의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공익가치 추구분쟁

공익적 가치분쟁은 지역개발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보다는 시설입지로 인한 생태계, 경관 및 문화재 보호, 차세대의 이익 등 공익적인 가치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정부나 주민 모두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주장의 객관성, 합리성 여부가 분쟁해결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공익적 가치추구 분쟁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 스스로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및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의 활용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익적 가치분쟁은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생태계 파괴, 경관 및 문화재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없이는 해결이 곤란하다. 따라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저감대책의 마련과 이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민 및 시민단체에 의한 관리·감시제, 피해유발 지역보험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인 조치의 마련이 검토될 수 있다.

분쟁성격별 제도개선 방안

분쟁유형	개선방향	제도적 조치
보상 및 입지기피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및 관리체계 도입 ○ 지역간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증진 ○ 기술적 저감대책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주민참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단계: 입지선정,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참여장치 확보 · 관리 및 집행: 주민옴부즈맨, 모니터링제 도입 · 합의불능: 관련 주민투표제의 도입 ○ 지역보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험, 편익시설 투자 등 · 공평부담원칙에 의한 비용분담제 ○ 기술적 보장장치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시공. 시설수준 강화 · 피해저감 장치 및 실행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피해산정기준과 원칙의 도입 ○ 다양한 보상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립적인 전문가와 전문기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시스템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도입 ○ 피해보상의 다양한 보상·지원
공익적 가치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시민단체의 자율적인 결정권 존중 ○ 기술적 저감대책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해결대안 마련을 위한 지원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립적인 전문기관의 활용 위한 재정지원제도 도입 ○ 기술적 보장수단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관리 감시제 · 피해유발 보험제 · 다양한 기술적 저감조치강화

분쟁해결, 인식전환과 공동이익 창출의 기회로

다양한 이해조정과 통합과정의 불가피한 산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당사자간 협의조정 및 제3자에 의한 조정 등 제반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분쟁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이에 대응하는 자세와 관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개발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이용과 배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개발관련 갈등과 분쟁은 지역간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심하고 민주적인 제도나 참여절차,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와 조정제도가 미비한 상태나 사회에서는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자원배분과 업무추진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쟁을 부정적이고 사회병리적인 시각에서만 인식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의 조정과 통합을 이루는 과정의 산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발전과정의 산물로서 불가피한 현상인 경우, 지역개발 업무수행에서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인정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수용하여 추진해나가는 유연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공동의 이익추구를 통한 분쟁해결

분쟁은 당사자간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소될 때만이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한다. 분쟁당사자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관점과 논리 하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부당성만을 강조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쟁원인을 규명하여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합리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은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개발관련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권·강제조정 등 사후적인 조치와 제도구축 보다는 분쟁에 대한 인식전환과 상호협력의 관행 확립을 위한 교육과 합리적인 거래(bargaining) 원칙정립,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의 및 조정기반 강화, 정부계층간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마련에 치중해 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 공보처. 1995. 환경분쟁을 통한 지역공동체 건설사업.
- 경기개발연구원. 1996. 수도권 교통대책기구 설립방안.
- 김갑성 외. 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쓰레기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 김용웅. 1996.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전제와 조건. 지방행정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3-75.
- 김용웅·차미숙. 1997. 국토개발관련 분쟁의 발생실태와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김용웅·차미숙. 1998. 국토개발관련 분쟁의 발생실태와 조정방안,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국토개발연구원. 3-41.
- 미래연구소. 1998.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리:상수원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연구소.
- 박우서. 1988. 광역행정과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9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9-55.
- 삼성경제연구소. 1997. 함께 풀어가는 지역갈등.
- 조용래. 1996. 수도권교통대책기구 설립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차미숙. 1998. 지역개발분쟁, 이렇게 해결했다(1):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과 관리. 국토 8월, 국토개발연구원.
- 차미숙. 1998. 지역개발분쟁, 이렇게 해결했다(2): 지역간 도로개설. 국토 9월, 국토개발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자치행정과). 1998. 광역행정업무 발전계획.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6.

- Amour, A.M. 1991. The Siting of Locally Unwanted Land Uses:Towards a Cooperative Approach. *Progress in Planning*. vol. 35. Pergamon Press. 1-74.
- Bollens, J.C. & H.J.Schumandt. 1982. *The Metropolis:Its People, Politics, and Economic Life*. Harper & Row Publisher.
- Godschalk, D.R. 1992. Negotiating Intergovernmental Conflict:The Case of Human Servoces. *PAR*. vol.45. no.5. 403-410.

부 록

국내외 분쟁해결사례 요약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간지 뒷면

빈 page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정부간 분쟁

지방행 · 재정분야

분쟁명 (분쟁주체)	분쟁개요	해결내용
짚형 자동차세 감면폐지 (서울시-통상산 업부)	· 짚형 자동차세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 '94년 55%, '96년 26.6%, '97년 13.3%, '98.1.1 폐지 · 이에 대해 美측에서는 외국산자동차 에 대한 韓美양해각서('95년) 위반이 라며 재고요청 ('96년)	· 한미양해각서 체결 이전부터 정부방 침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설득, 이해 시킴 · 감면 폐지('98.1. 1)
주택정책관련 분 양가 자율화관련 (서울시-건설교 통부)	· 주택가격(표준건축비) 규제에 따른 주택의 質 저하방지와 민간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건교부에 소형주택 금융지원확대 및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 화 건의('95년) - 건교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우 려 반대입장 견지	· 민영주택분양가 전면 자율화('98.2. 1) ·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98.5.8)
조령산 자연휴양 림 문경새재 공 원입장료 이중징 수(충청북도-경 상북도)	· 충북의 조령산 자연휴양림과 경북의 문경새재도립공원의 도경계지역인 조령삼관문 부근에 양도가 매표소를 설치하고 각각 입장료 징수로 래방 객에게 불편제공으로 민원 발생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95.12.15) - 양도입구에서 2종의 입장권 동시판매 - 도계지역의 양도매표소를 1개소로 통합 - 입장료수입 정산은 도간 협의 결정 · 충청도에서 휴양림 입장료 징수에 대 한 도조례 개정시행('97.10.24)으로 해 결완료(단순통과자 입장료면제 조치)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자치단체장 해외출장 허가제 관련 (충북 청주시 등 자치단체-행정자치부)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자매결연 등을 위해 해외 여행을 해야 할 경우 공무국외여행 허가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도지사 등의 사전허가제 폐지요망	·'98.1.22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 -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제 폐지(지침변경 : 사전협의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지침』 폐지('98. 4.13) - 사전협의제 → 5일전 통보제로 변경
남구 대촌동지역 내 광산구유지 재산관할 분쟁(광주광역시 남구-광산구)	·'95. 4 행정구역개편시 광산구에서 남구로 편입된 대촌동 지역내 구유지중 잡종재산이라는 이유로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16필지 17천평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재산관할권을 주장 - 남구: 16필지중 행정목적에 공여되고 있는 10필지로 사실상 행정재산이므로 당연 승계대상이며, 나머지 6필지도 지역관리상 남구관할 필요" - 광산구: 16필지 모두 행정목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인계 불가	·'97. 7 광주시에서 분쟁조정 - 사실상의 행정재산 1필지 남구승계 나머지 15필지는 잡종재산이므로 소유권 주장을 중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분쟁당사자에 제시, 상호협의 처리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양 자치구에서 이를 수용('98. 4 행정재산 1필지 소유권 등기)
유성구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구관내 초등학교의 급식시설비 지원(27억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승인을 요청하고(대전광역시에서 불승인 '96. 6. 1) ·시장의 승인없이 구청예산에 20억원을 편성 보조결정함에 따른 분쟁으로 - 학교급식시설에 교육청예산이 아닌 자치구 일반예산 지원가능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 야기	·'97. 1. 11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요청 승인(15억원)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마권세의 국세 이양반대(경기도-행정자치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장기적인 조세체계 개편방안의 하나로 “마권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반발 - 마권세 세입을 경마시설에 따른 간접 비용(쓰레기수거, 교통체증 등)을 부 담하는 자치단체에 귀속됨이 타당	·마권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하지 않도록 함('96.3.13)
정부의 개발관 련 규제정책완 화(경기도-건설 교통부)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요망 - 건교부에서는 수도권내 과밀화우려 규제 완화 불가 입장	·군사시설보호법령 개정으로 일부 군 사시설 보호 축소 및 행위제한 완화 (‘96.1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첨단대 기업 증설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및 생활편익 시설 확충 등)
서도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지정(전북 남원 시-임실군)	·남원시에서 '95~'96년에 시행한 경지 정리 사업 서도지구내에 남원시와 임 실군경계가 인접되어 하천의 자연조건 및 지형여건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	·남원시와 임실군 상호 동일면적교환 합의 해결('98.4.17) - 남원시에서 임실군에 편입(2,577㎡) - 임실군에서 남원시에 편입(2,577㎡)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 권 분쟁(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사회복지사업법운영지침에 의하면 법인 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서 시설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법 인 및 시설에 따른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영구가 사전 협의없이 강서구로 소재 지 변경 등 정관을 변경 허가하고 법인 관리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서구에서 인 수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98년)	·부산시 보사국장 주관으로 강서·수 영구 관계관 회의에서 강서구에서 『동향원』을 관리토록 조정('98. 2. 5)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제주도 채낚기 어선과 안강망어선의 조업분쟁(제주도-해양수산부)</p>	<p>·갈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본도 채낚기 어선과 조업방법이 상이한 타도 안강망어선들이 동일어장에서 근접 조업함으로써 인하여 상호 잦은 분쟁 발생(95.10.17) - 채낚기 어업인은 제주도주변 8마일 이내의 해역을 안강망어업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채낚기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어장 확보 요망 - 안강망어업인은 제주도 주변해역에 대한 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 반대</p>	<p>·제주연안 조업분쟁관련 양측 어업인 대표간 자율 합의(96.1.31) - 제주도 8마일 이내 해역에서는 매년 6.1~10.31 사이에 20:00~익일 04:00까지 안강망어선 조업 금지</p>
<p>학교급식 시설비지원 관련 (제주도-행정자치부)</p>	<p>·'95.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당시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68개교에 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어 선거 후 선거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고등학교 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중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95.4.10)하면서 발생</p>	<p>·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복권을 발청하여 판매수익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가능여부를 내무부에 질의(95.8.24)한 결과 가능하다고 회신(95.12.26)함으로써 해결</p>
<p>비관리청 하천공사 폐천부지 양여(경남 김해시-부산시 강서구)</p>	<p>·서낙동강 일원에 대한 매립공사로 매립지 조성에 따른 조성원가 이견 - 김해시에서는 조성주체로서 김해시에서 일단 양여받아 행정구역에 따라 배분 및 총조성가 산정은 준공인가 금액과 양측이 추가 투입한 비용 및 그 발생이자로 할 것을 주장 - 토지면적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주장</p>	<p>·행정협의회에서 농산물직판장은 조성 원가에 포함하고 이자계산은 실제 준공일로부터 매각계약 시까지 합의</p>
<p>강서구관내 김해시 소유재산 정리(경남 김해시-부산시 강서구)</p>	<p>·김해시에서 부산 강서구지역을 부산시로 이관함에 따라 재산권 이전문제발생 - 강서구에서는 공부상 행정재산 전부를 인수요망하고 김해시에서는 행정재산 중 사실상 잡종재산은 존치를 주장.</p>	<p>·양 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용도에 따라 분할키로 합의 ·강서구와 공유재산 인수인계완료(97.12.30) -인계재산 : 106필지 -존치재산 : 74필지, 237,896㎡</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및 감시(경남 김해시-부산시 강서구)	·강서구는 서낙동강의 오염원을 김해시에서 서낙동강으로 흐르는 신어천, 해방천, 조만강 오·폐수단속 요청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 합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강원도-문화관광부)	·석탄산업합리화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공동화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상산업부에 요청('95. 6. 3) ·특별법안에 대한 부처협의과정에서 문화관광부 등 일부 부처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위한 특례규정 삭제 요구 - '95.11.2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강원도안을 일부 수정 (1개소에 예외적으로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 가능)	·카지노업 허가규정이 포함된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95.12.29)
공유수면매립지 경계구역 조정(경기도-인천광역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지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6-10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시흥시 관할구역으로 편입조치 ·도시계획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기준으로하여 약214천평을 인천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할 것으로 요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97.1.1.28) ·심의결과, 공유수면매립지 경계구역은 절차상 적법처리, 공익적 차원의 관리운영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시흥시 관할구역으로 편입
상무대부지내 공원용지 인계(광주광역시-전남)	·'86. 11 광주직할시 승격에 따른 재산 승계시 국방부가 징발중이던 전라남도 도유지 20,443평중 16,953평을 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양여해 줄 것을 요구 ·광주시 : '86. 11 직할시 승격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광주시가 도유지 승계함이 타당하며, 상무시민공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행정재산임 ·전남도 : 상무대 이전시 국방부에서 징발해제된 잡종재산이므로 무상양여 불가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전남도 도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논쟁은 전남도의 양여불가 입장에 변동 없이 1997년말 이후 논의중단 ·광주광역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8년 8월 매입비 일부를 확보, 1998년 12월 유상매입 계약체결, 분쟁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쓰레기처리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충북 음성군-진천군)	·'92.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인접해있는 맹동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수계내에 있는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면서 반대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상위기관인 충북도의 중재 및 재정지원에 의해 음성, 진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대형소각로(상무소각장 건설) 설치공사 발주 관련(광주광역시-조달청)	·'95.10 조달청은 광주시가 발주 의뢰한 상무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 ·'96. 5 광주시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0.1ng/m ³)을 공사계약서에 명시 할 것을 요구 - 조달청: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 변경 곤란하므로 광주시 요구 수용 불가 - 광주시 : '96. 7 공사 중지	·'96.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관청인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선진국 수준인 0.1ng/m ³ 이하로 낮출것」을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처분 - 조달청 : '96. 8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추가 - 광주시 : 공사중지 해제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충북 청주시-청원군)	·'91.10.30 행정협의회를 통해 청주·청원 광역권쓰레기매립장을 조성키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92.12.5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았으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치단체간의 견해차이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GB내 행위허가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각하처리) ·이에대해 청원군에서는 설치장소 및 사업비 분담에 이견을 제기	·최신 환경위생 시설 설치 및 마을회관 건립·진입로 포장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약속 등을 통해 주민 이해설득으로 '97. 9 공사재개 - 부대시설 공사완료('98.10월중) -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98.12 완공예정)
광양시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전남 순천시-광양시)	·'95.10.17 여순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양시장이 광양시 태인동 폐기물처리장시설이 포화상태가 임박하나 신규매립장 조성공사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순천시장에게 위탁처리 요청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갈등 해소(순천시에서 2회반입 허용)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주체)	분쟁개요	해결내용
여주군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 재고(강원도 원주시-여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여주군이 쓰레기매립장을 원주시 문막읍 접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96.7.31)됨에 따라 동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침출수가 지하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농작물·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됨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96.8.13이후) - '96. 9. 6 원주권행정협의회에 여주군 불참 - '96.9.12 원주시의회에서 반대건의문 채택 발송(14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여주군에서 동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원주에서 환경오염 및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부지선정 요청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수원시 하수처리장 확장부지협의 (경기도 수원시-화성군)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번지 일원 기존 처리장에 인접하여 수원시에서 2단계 처리장을 건설코자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 중 갈등 발생 - 화성군에서 주민피해최소화 및 화성군 위촉평가가사 평가 요구	· 보상가액 산정시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평가사가 평가기로 하여 실시설계 용역착수 ('98. 4.23)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증설(경기도 안양시-광명시)	· 안양시에서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30만톤/일-83만톤/일)계획에 대한 광명시의 반대('95. 4)	· 안양시에서 사업계획 변경('95.1.26) - 안양시 석수동으로 위치변경 '97.12.12 착공(사업비증가, 사업기간연장, 시설관리의 2원화 등 문제야기)
용인수지하수처리장 이전분쟁 (경기도 성남시-용인시)	· 시설물 미준공 상태에서 무리한 시험가동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이 시설물가동 및 공사중지, 용인수지하수처리장(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설치)을 오수발생 원인지역인 용인시로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민원으로 확대 및 단체에서 건립을 반대('95.9) - 성남시에서는 1지구 시설(15,000톤/일) 인계, 미승인된 계획시설(22,500톤/일)은 용인시로 이전요구 - 용인시에서는 1지구시설 보완 및 성남시가 하수처리계획에 포함할 경우 모 든시설 및 부지(구성 하수처리장설치 계획 67,500톤/일도 통합처리희망)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용인수지지구 하수를 성남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토록 권고('95.11.18) · 성남 용인, 토지공사, 경기지사간에 탄천수계 오수통합처리 협약 체결('96.12. 24) · 환경부 주관 관계관 회의에서 실무사항 합의('97.8.29)
검단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하수처리대책(경기도 김포-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불노지구(월드건설, 퀸스타운, 길훈건설, 동선건설 : 4,100여세대)의 아파트 건립추진에 따라 생활오수의 나진천 유입으로 인근 농경지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책 요구 · 불노지구 4,100여세대의 대단위아파트건립에 따라 공사완료 입주후 발생하는 오수가 김포시 나진천을 경유하여 한강으로 방류하므로써 생활오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반대	· 김포시에서 인천시에 불노지구 하수처리계획을 요청('97-'98년 4회)한 바 검단 하수처리장을 건설 2006년까지 아파트단지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처리하겠다고 회신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천안시 신방동 분 노처리시설 증설 공사(충남 천안시 -아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는 분노처 리시설 증설(천안시 신방동)공사에 따른 아산시 배방면 휴대리·장대리· 세교리 주민들이 하천 오염, 악취발 생을 우려 설치반대 - '96.10.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서 제출(주장내용 불가 회신)	·고충처리위원회 회신 내용에 따라 신청인주장 수용불가 후 별다른 반 대 상황없이 분노처리시설 이전 증 설공사'97.4.22 증설공사 완료
태안 분노처리장 공동사용(충남 서 산시-태안군)	·'89년 태안군이 서산군으로부터 분 리 그동안 사용해오던 서산, 태안지 역 분노처리장을 서산시의 별도 설 치시까지 공동사용 제의에 대해 태 안지역 주민들은 악취, 환경오염을 내세워 타지역 분노반입에 반대 - '89. 4 서산·태안권행정협의회에서 서산시·군에서 시설사용 부담금을 각각 5,000만원씩 부담기로 결정하 였으나 태안군에서 부담금 수령을 거부('91. 4) - '91. 4 서산시의 공동사용요구에 태안군에서 불가 회신	·서산시 분노처리장 완공시까지 해양 투기 허가(태안경찰서) 획득('96. 10) - 해양투기허가 획득과 자체시설 사 업 추진('97년 착공)으로 해소가능
사천시 하수처리 장 건설개선대책 (경남 사천시-고 성군)	·'94. 7. 30 환경처 고시 1994-60호로 舊삼천포시의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가 인가됨으로서 고성군 하이면과의 경계지점인 사천시 사등동 모랫마을 일원에 본 처리장을 건설중으로, 향 후 완공하여 가동시 악취 및 바다오 염을 우려, 고성군 하이면 발전 위원 회에서 '97.9.23일 탄원제기	·'97. 10월 하이면 발전위원회 대표가 사천시를 직접 방문, 사업계획을 청 취하고 이해함으로써 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창원시 분뇨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경남 창원시-환경부)</p>	<p>·창원시는 시비(9,280백만원)로 환경부가 고시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였으나('92. 11), 분뇨의 정상처리가 되지 않아 환경부에 시설 재투자비 국비 지원 요청</p> <p>- 환경부에서는 전국 12개 감압증발식처리장의 운영실태조사결과 분뇨처리시설 지정 고시를 삭제('95. 1.17)하였으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방식결정과 관리문제는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검토할 사안이라며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 견지</p>	<p>·환경부가 분뇨처리장 개체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지방양여금 9,646백만원)을 결정함에 따라</p> <p>·고효율산화방식에 의한 창원시의 분뇨 처리장 건설가능('99.10 준공예정)</p>
<p>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분쟁(경남 밀양시-밀양군)</p>	<p>·'89. 9. 1 정부가 발표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밀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은 '93년 기본설계 실시, '93년 착공, '96년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밀양시·군간 의견대립으로 분쟁발생</p> <p>- 3차에 걸쳐 '93년 행정협의회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 불일치</p> <p>- 밀양시에서 상남면 기산리 설치계획을 건설부, 환경처, 경남도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부지로 적합 회신</p>	<p>·공공시설 입지승인에 따른 협의결과 향후 추진에 대한 밀양시·군 의견일치('94.3.2)</p> <p>- 밀양군 상남면 기산리 분뇨처리장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위험 및 기피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청주시 공원묘지의 청원군 공동사용 (충북 청주시-청원군)</p>	<p>·청원가덕공원묘지의 만장으로 청주시에서 새로 조성한 목련공원묘지('97.10.13-7,390기)를 청원군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p> <p>- 청주시 :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공동 사용 불가</p> <p>- 청원군 : 기 만장된 가덕공원묘지를 청주시민도 사용하였으며, 목련공원부지를 청주시로 편입시켜 주고 '92행정협의회의 의견 절충을 보았으므로 공동사용요구</p>	<p>·청원군은 청주시에서 공동 사용 불가입장을 밝힘('96.2.19)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원묘지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선정 및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음</p>
<p>서해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 지원요구(충남 보령시-한국전력공사)</p>	<p>·서해화력발전소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83.12.28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03-1번지 일원에 취수장 건립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농업용수 및 식수난 우려 주민 반발</p> <p>- 보령시 : 취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요구</p> <p>- 서해화력 : 발전소 소재지인 서천군 서면 지원도 미흡하다며 지원 불가입장 견지</p>	<p>·대전권행정협의회장 명의 협조공문 발송('93.12.20)</p> <p>·지역안정 차원에서 마을진입로 포장 등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보령시에서 '97년부터 년차적 자체해결키로 함으로써 민원해소</p>
<p>보령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충남 보령시-한국전력공사)</p>	<p>·보령복합화력측에서 발전소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96.7.30)하자 보령시에서는 민원 4개항의 해결을 조건으로 허가('98. 8. 7)</p> <p>·보령화력측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민원사항 미해결, 착공신고없이 공사를 진행하자 보령시에서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96.8.10)과 함께 착공신고서 반려 조치(3회)</p> <p>·'96.12.30 보령화력측에서 착공중지처분 취소의 소를 대전고법에 제소(착공중지로 손해발생 인정 인용결정)</p> <p>- 보령시에서는 '97.1.25 대법원 상고(상고취하)</p>	<p>·'97. 5. 8 보령시와 한전(보령화력)간 당초 허가조건사항 이행의 원만한 협의추진 및 피해어민 보상해결 후 착공신고서 수리('98. 4. 8)</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영광원전 건축허가 취소의 취소(전남 영광군-한국전력공사)</p>	<p>·한전이 '95.11.10 영광군에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하여 '96. 1. 22 영광군에서 허가하였으나 지역주민과 반핵단체의 지속적인 집단행동으로 군정수행이 곤란하자 '96.1.30 허가 취소</p> <p>- 한전에서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처분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감사원-발전소건물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결정('96.1.30) 및 이행 최고('96.9.16)</p>	<p>·영광군의 건축허가취소에 대해 재취소('96.9.17)로 분쟁해소</p>
<p>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및 처리과정(인천시-한국전력공사)</p>	<p>·한전에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흥도 공유수면을 매립 유연탄 화력발전소 12기를 건설하려하자 영흥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p>	<p>·인천시는 발전소 운영기수 12기를 6기로 축소하고 환경영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 인가</p> <p>·인천시는 한전과 환경협정체결</p> <p>- 선진국형 탈진, 탈황, 검진시설 설치</p> <p>- 오·폐수 재이용시스템, 석탄회의 재활용율을 높여 매립면적 대폭 축소</p> <p>- 환경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주)한일합섬 연료저장탱크 이전관련분쟁 (경남 마산시- 창원시)	·마산시 관내 (주)한일합섬 연료저장탱크 를창원시로 이전 요구('90. 12)함에 따라 양자간 이해관계 대립	·통산부 창원국가공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96. 6) ·(주)한일합섬 위험물저장 부지 조성 추진
상무대 현안문 제 추진에 따 른 갈등 (전남 장성군- 국방부, 행자 부, 건교부)	·'88년 국방부에서 상무대를 장성군 지역 으로 이전 확정고시 ·'94년 보병학교 이전을 시작하여 5개학 교와 지원부대 이전완료('95)한 후 제병 협동훈련장 880만평 확장요구에 주민집 단 반발 - 장성군에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요구 및 지적공부발급 거부	·B.H, 중앙부처 연석회의를 개 최('96.10.31) 하여 장성군 요구 8개현안사업비 2183억원을 지 원키로 약속 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도로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용마산터널, 암사대교 건설(서울시-경기도 구리시)	·'95. 7 서울시 사가정길과 구리시 도평동을 연결하는 도로 및 암사대교 건설 협의 과정에서 구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분담 곤란, 마을 우회노선 주장 - 서울시에서 구리시 요구 노선 수용, 용역 착수('98.5.19) ·'98. 4. 21 광역도로로 지정 및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 결정	·건교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97.1.17)에 의해 광역교통기획단 발족으로 국고지원 가능 ·'98.5.19. 구리시의 암사대교 및 연결 도로건설 기본계획 용역과정 수행과정에서 구리시 요구노선을 검토수용,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 협의추진
부천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서울시-경기도 부천시)	·부천 중동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코자 부천중동 신도시~서울 양천구 고척동까지 개설토록 광역교통계획에 의거 제시된 도로노선을 개설함에 있어 2개 지자체간에 걸쳐 있는 사유로 인해 지자체간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92.2.17)하되 서울시 구간사업비를 부천시에서(사업비 3,073백만원 납부) 전액 부담키로 하고 부천시 구간(2.3km)을 '92. 12월 개설, 완공하였으나, 서울시(양천구)측에서는 본 도로가 통과하는 목동 신시가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유발 및 주거환경의 악화사유로 최근까지 도로 개설을 미루고 있었음	·건교부가 확정하는 광역교통계획(사업)에 포함하여 보완 및 재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8. 10월부턴 보상을 실시한 후, '99. 3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2000년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 예정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서울시-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선암로와 서울 반포로를 연결하는 우면산 터널을 개설키로 합의('92.11.6 수도권행정협의회)하였으나 서울시는 재원 부족으로 지연('96년부터 추진)	·건교부주관 회의에서 서울시구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95.4.20)
광명시 기아대교 및 진입도로 확장(서울시-경기도 광명시)	·'95년 수도권광역교통정책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경기도 광명시 구간의 기아대교 및 진입도로 확장 사업으로 ·광명시에서는 행정구역별로 사업시행을 서울시에서는 광명시에서 서울시구간을 포함 공사시행요구로 갈등야기('96년)	·'97년도에 광명시 요구를 서울시에서 수용, 행정구역별로 사업추진키로 함 - 서울 : 설계용역 - 광명 : 보상협의 및 공사입찰중('98.5현재) ·'97년도에 기본계획고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98.10 공사착공(2002년 완공예정)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서인천-도화IC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건설 교통부(도로공 사)-인천시)	·서인천~도화IC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도로의 교통정체현상 해소를 위하여 공사기간 1년 단축요망	·서인천I.C~가좌 I.C간 4.2km는 '97완료, 잔여 구간 2.6km도 '98.10월 완료 예정
대구 시내버스 연장 및 증차 운행 (대구광역시 경북 고령군)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주민들이 대구 왕래시 도보나 택시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까지(2.7km)나와서 대구시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구시 시내버스를 경북 고령군 다산면까지 연장 운행 요청	·대구·시내버스 1일 12대 증차운행 동의('97. 5. 2)
대왕교 조기 가설(서울시- 경기도)	·노후교량으로 지정된 대왕교(강남구 울현동)를 서울시에서 철거 후('94.12) 사업우선 순위가 낮아 재가설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 초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계획 관계관회의 40억(전체사업의 50%) 국고 지원
천안-온양간 농어촌버스 운 행노선 조정 (충남 천안시- 아산시)	·천안·온양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대부분 천안 도심지역 통과로 교통체증을 유발, 이의 분산차원에서 동·서부지역으로 노선조정 계획에 대해 아산시에서 버스업체의 수익감소를 이유로 노선조정에 적극 반대	·기존 노선대로 운행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고 ·향후 현안문제로 계속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자체 종결처리('97. 5. 8)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강변북로(천호대교-토평동간)건설(서울시-경기도 구리시)	·서울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천호대교~구리시 토평동간 도로개설과 관련 당초 구리시에서는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비 분담문제로 갈등 야기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에서 원칙 합의('97.4.23) ·협약체결('98. 2. 18) - 사업비는 행정구역별 분담, 서울시에 서 공사, 보상은 행정구역별로 추진 · 건교부에서 광역도로사업으로 추진 키로 합의함으로써 국고 50% 지원('98.4.21)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 개설(서울시-경기도 고양시)	·가양대교북단과 연결되는 동·서·남·북측 도로망 구축의 일환으로 - 서울시에서는 우선 가양대교북단~수색로간 도로를 가양대교 개통과 동시 개설을 요구하나 -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향동등~은평구 신사동 도로개설이 급하다고 주장하며 사업비분담 곤란으로 협의 지연	·'97.1.1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제정 및 광역교통기획단 발족으로 자치단체간에 걸쳐있는 광역도로에 대한 사업비 국고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단체간 도로건설 추진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업비 부담 최소화로 사업추진 합의전망
진주 금곡-고성 영현간 도로확·포장사업(경남 진주시-고성군)	·진주 금곡과 고성 영현간 연결도로의 확포장 계획(총연장 2.9km)이 진주시 구간은 '92년에 완공하였으나 고성군에서는 '94.12.12 공사를 착공한 후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 - 진주시에서 조속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재원분담 문제로 협의지연	·'96.5.20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사업비 분담(고성군,행정협의회) 공사착공 재개('96.12.30) - 진주시 : 192백만원 - 고성군 : 208백만원 - 도 비 : 200백만원
양산-노포간 지방도(1077호)확·포장공사(부산광역시-경남 양산시)	·양산~노포구간중 양산시측 구간도로는 확·포장 공사를 착수('94. 6) 하였으나 부산시의 재원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양 도시간에 6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동시개통키로 합의·추진 -경남도 구간은 당초 4차선 계획을 6차선으로 확장키로 변경시행('97.1~'98. 3)중이며 -부산시에서도 6차선으로 실시설계중이며 한국토지공사 양산직할사업단 측과 협약 추진중임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김해시 국도14호선 접속지점 변경협의(부산시-경남 김해시)</p>	<p>·국도 14호선은 거제시와 포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김해시는 한림면 병동리에서 불암동까지의 노선을 변경코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우회도로 개설중</p> <p>- 중점부를 김해교에 접속할시 녹산공단에서 양산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방도 69호선과 남해고속도로 인접으로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어 부산시 강서구에 접속지점 변경 요청</p>	<p>·'97. 3. 13 부산시와 협의하여 김해교로 부터 300m아래의 부산시 낙동강변 광로와 접속하기로 합의</p>
<p>무주군내 버스 충남금산노선 연장운행(전북 무주군-충남 금산군)</p>	<p>·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시군여객버스 차고지(주사무소)로부터 30km 이내로 제한되어</p> <p>·무주·진안·장수지역의 무진장여객은 충남 금산군지역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충남지역 한일교통버스는 이 지역까지 운행하고 있음</p> <p>- 무진장여객 차고지(진안) : 금산까지 30km이상(운행불가)</p> <p>- 금산한일교통 차고지(금산) : 무주까지 30km이내(운행가)</p>	<p>·무주군 농어촌버스 무진장여객이 부남~남일~금산 구간을 1일 왕복 4회 운행하고 충남 금산군 소재 한일여객이 금산~남일~부남 1일 왕복 4회 운행조건으로 타결('96.4.25)</p>
<p>장수-진안간 군도개설 (전북 진안군-장수군)</p>	<p>·장수군(군도1호)에서 진안군 마령면(군도 11호)간 도로가 개설되면 장수~진주간의 거리가 13km 단축되어 장수·진안군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총연장 21.5km중 장수군 구간 8.1km는 '94년까지 완료하였으나</p> <p>·진안군지역 13.4km중 '95년도에 8.1km마치고 잔여구간 5.3km 미착공</p> <p>- 재원조달 곤란을 이유로 조기 착공곤란 입장</p>	<p>·'94. 4. 7 전라북도의 지방도 742호로 승격되어 전라북도 '96사업반영(예산 23.5억원)으로 해소</p> <p>- '96. 2. 3 실시설계</p> <p>- '96. 7월 착공</p> <p>·2001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광주대-도곡온천간 도로개설 (광주광역시-전남 화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화순도곡온천 관광휴양지간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으로 갈등 야기('91.12.31) - 당초 전남도비지원을 받아 농로확장을 추진하였으나 '96년 지방도로승격 시킴으로써 전남도 주관으로 도로개설이 추진됨 - 이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광주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비 부담을 요청하자 광주시에서는 사업비 부담 문제로 소극적 입장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5. 12 광역행정실무협의회를 광주광역시와 터널 착공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 - 사업비 분담 : 광주 16억원, 전남(화순) 16억원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을 둘러싼 분쟁(경주시,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말까지 경주노선을 둘러싸고 문화체육부와 건설교통부가 서로 다른 입장 - 문화체육부와 고고학계: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시까지 우회통과 주장 - 건설교통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우려로 도심통과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7.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 자문위원회회의, 현지 합동조사 실시(교통개발원), 시민공청회 개최 · '97.1. 건설교통부, 새로운 경주노선 및 화천역사 최종확정 발표 - 화천리노선: 문화재 훼손이 적고, 역입지가 벽도산과 망산에 가려있어 남산경관보호 가능, 설계기준 부합, 기술적 타당성, 사업비 절감효과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철도 및 교통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서울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건설관련 토지이용비용부담(서울시-경기도 의정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7. 서울시에서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설치하기로 하자, 의정부시가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 ·'93.2. 교통부에서 의정부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수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기로 합의하고 공사착공 중재 ·서울시는 토지기회비용으로 의정부시가 414억원을 요구하자, 비용산출의 객관성결여를 이유로 공사준공기간이 지나도록 비용부담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는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거부 ·경기도, 내무부에 분쟁조정신청('96.5.9) ·내무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서울시의 비용부담 범위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도봉산역 승환역사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회차시설을 포함한 역사시설의 토목 건축공사비, 운영시스템 설치비, 기타 부대공사비로 한정
3여 택시사업 구역 통합(전남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麗 시·군은 여수반도권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업체간 또는 택시기사와 이용자간 사업구역 위반 및 요금 시비 등 상호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추진 - '92.6.20 여수권행정협의회에서 통합합의 ('93~'97년까지 5회 협의) - '98.3.27 3麗 시장·군수 합의 조정하여 '98.4.1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 4. 1 통합여수시 개칭이후 택시사업구역도 통합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읍·면택시(50%)시내 영업제한에 따른 문제점 등은 읍·면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이해설득으로 갈등 해소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철도청의 군산 컨테이너부두 건설 반대(철도청-전북 군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청에서는 군산시내에 위치한 군산역사와 군산내항철도부지에 컨테이너 야적장 건립 · 철도청에서는 CY부지의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며 기착수한 조산내항 CY 조성 계획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 · 군산시에서는 市발전 위하여 시내에 위치한 군산역의 시외곽지역 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설치로 교통체증과 역사와 철도의 외곽이전이 어렵게 되어 장기발전 저해 주장하며 · CY부지를 주차장 및 조경공간으로 무상사용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9.4. 한진은 야드조성 238백만원 요구, 군산시에서 철도청 사용승인을 받아 지불 -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 · 군산내항 CY공사를 중지하고, 대야역에 대체CY조성에 합의, 분쟁해결
신공항건설 촉진법개정관련 건의(인천광역시-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관련건교부와 인천시와의 대립 - 건교부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은 공항건설사업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항주변지역을 산업 시설, 물류단지, 관광시설 등을 갖추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의견수용 신공항건설촉진법에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 명시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6 km범위내에서 일정지역을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광역상수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광역상수도(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경기도 안양시-의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을 목표로 안양, 군포, 의왕시가 통합 정수장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94.6.21) -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96.1.29)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사전승인('96.11.14)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수장건설 소재지인 의왕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령에 없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허가를 지연시킴 - 시설운영권, 세부결손보상, 포일정수장투자비 반환방법에 대해 안양시와 의왕시간에 의견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조정으로 의왕시에서 기존의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정수장규모를 축소(日4만톤→2만톤)하고 앞으로 의왕시는 별도로 정수장을 건립키로 합의한 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97.11.21)
제천시 장곡취수장 설치사업 반대(충북 제천시-강원도 영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시가 용수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창강을 수원으로 하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건설부로부터 사업인가('91.12.24), 공사착공('91.12.26) ·영월군, 취수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영월군 지역주민들은 제천시 취수로 하류지역의 용수난, 생태계 파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5. 건교부 주관으로 영월군 광역상수도 건설회의 개최 ·'97.4.23.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 - 제천,영월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영월권 광역상수도 조기 완공논의 ·'98.5. 건교부에서 수립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2000-2004까지 영월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내용 반영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댐건설 및 관리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인제 내린천댐 건설 백지화요구(강원도 인제군-건설교통부)	·'97.4.24 지방언론 보도내용중 소양강 상류 보조댐 건설 계획발표로 지역문제화 ·인제군에서는 지역대책협의회를 개최('97.4.6) 하역 대책위원회를 구성(군·6개읍면 구성)반대 - 범군민서명운동, 켈기대회, 국회등 관계기관 방문 항의 등	·'98.1.30 정부(건교부)의 내린천댐의 건설 백지화 통보로 분쟁해소
주암댐 수질관리대책(광주시, 전남 해당 시군, 수자원공사)	·주암댐 취수탑으로부터 약 2.5km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용문마을(33세대)의 이주대책 등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전라남도지사가 당시 광주광역시 등 7개 수도사업자에게 출연금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광주광역시에서만 반대함으로써 분쟁발생 - 광주광역시는 관리비용 및 출연금내역 과다 및 이중부담이라며 반대 - 전남도내 10개시군 및 수자원공사는 보호구역관리비용 부담 협약을 체결하여 '95년부터 분담	·1995.9.14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한 주암댐수질보전대책협의회에서 주암 용문마을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 분담 협의 결과 11개 시군과 공사에서 주민이주대책사업비 재원을 출연금으로 확보키로 합의되어 연도별 추진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음
경주 대현댐확장 건설반대(수자원공사-경북 경주시)	·경주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대현댐 건설을 추진하던중('92.3.2 농림부로부터 사업시행인가, '94.4.11 공사착공) ·'95. 6 댐규모 확장계획이 알려지자 수몰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집단반대(댐확장시 운문댐 저수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에서도 반대)	·'96.12.1 관련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97. 1.3 확장계획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99년말 완공목표로 건설중)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영천댐 물사용료 일부지자체 환원(경북 영천시-건교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천댐 용수를 포항시에 집중공급, 이로 인해 영천시에서는 용수부족으로 인근 청도군의 운문댐 용수 일부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영천시(년간 7억원 소요)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사용료 일부 환원을 요구하면서 의견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사용료 일부 지자체 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의('98년부터 물사용료의 3%적립)하고 · 영천댐용수 1일 10만톤 공급건은 '97년부터 5만톤(1일) 우선 공급하고 임하댐 도수로 공사가 완료되는 '99년부터는 4만톤공급, 나머지 5만톤은 장기계획에 의거 검토기로 건교부·환경부와 합의
안동댐 관광개발권 관련 분쟁(경북 안동시-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안동시는 유교문화도시 부각 및 안동댐주변지역의 소득원개발을 목적으로 안동댐주변 관광개발계획 수립 · 안동댐 관광지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경북도와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 관광객과 낚시꾼에 의한 오염행위로 영남권의 최대용수원으로서 환경기준1등급의 수질유지 곤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4.10. 안동시는 환경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안을 수정 - 낚시터와 같이 안동댐의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제외 - 녹지자연도 7등급이자 수령이 20년 이상된 소나무군락의 원형보전
용담댐 건설에 따른 피해대책(충남, 전북, 건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권 및 군장지역 등 서해안 개발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한 댐 건설(총저수량 815백만^m) · 유역 930km²상실로 연간 4.9억톤 타수계 전환(금강→만경강)으로 용수부족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재건의 사항과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용담댐건설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93.2.9) · 건설교통부,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 의뢰 - 비상방류시설 1일 100만톤 규모의 시설을 보완하는 수량확보 해결 - 댐가동시 냉해피해 및 수질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요구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안동 길안보 설치공사(경북 안동시-건설교통부)	<p>· 건교부에서 '90. 9월 금호강 수질개선과 동남부지역(영천, 포항, 경주등)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지역에 길안보를 설치하여 임하댐과 길안보의 용수를 영천댐으로 도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자</p> <p>- 지역주민들은 안동 임하댐으로 인한 기상 재해, 인체 및 농작물의 피해를 이유로 길안보 설치 반대</p>	<p>· 수자원공사(낙동강사업본부)에서 보설치유보 표명으로 갈등상황이 잠재</p>
신어천 직강공사(부산광역시-경남 김해시)	<p>· 김해시, 신어천의 하류부 강서구 구간이 하폭이 좁고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상류부 하천범람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 김해시는 부산시측에 신어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폭확장, 제방높이기, 하천준설등 공사시행을 요구</p> <p>·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의 국비지원없이 재정여건상 즉각적인 공사시행 곤란하고, 예산이 하용 되는대로 직강공사시행주장</p>	<p>· '96.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 결성을 계기로 제1차 행정협의회에서 부산시 강서구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조기시행 합의</p> <p>· '97.8.31. 신어천 직강공사 착공</p> <p>· '98.7.6. 공사준공</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 개발분야 : 수질보전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경북, 대구시, 청도군, 경산시-수자원공사)	·상수원 전용댐인 운문댐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절차,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비용 부담문제 등에 있어 관리청(경북도, 경주시, 청도군), 수도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 수혜기관(대구광역시)간 이견 발생 ·재산권행사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한 인근주민의 보호구역 지정 반대	·'94. 9~'95. 5 자치단체협의회(4회)를 개최하여 해결방법 기본 합의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97.12.5) - 한국수자원공사가 청도군·경주시에 지정 신청 ·환경기초시설 및 관리비용 부담협약서 체결('97.11.21) - 대구, 경북,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수자원공사 ※비용부담-원·정수량 배급량기준 (대구시 80%, 경북도 20%)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경기도 고양시-양주군)	·양주군 지역계곡 및 녹지지역이 관광지화 되면서 각종 불법 음식점 및 오염배출업소가 생겨나고 수질 오염이 가중되어 - 고양시에서 불법오염배출업소 12건을 적발, 양주군에 조치 요구 - 양주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단속에 따른 인력·예산지원 요구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를 거쳐 행정협약 체결('97.4.3) - 단속권 이양에 따른 인건비 지원(년 4,600만원)
팔당상수원 규제강화조치와 관련된 분쟁(경기도 관련 시군-환경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을 구상('95.11.5)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발	·팔당규제 고시안 철회 및 특별대책 주민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법제정 건의 (경기도→환경부, '95.12.11)
태안 예천상수도취수장 일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반대(충남 태안군-서산시, 군)	·태안읍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천취수장 일원(서산시 인지면 화수, 둔당, 차리, 풍전리와 예천, 갈산동) 5.0km ² 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90.4 태안군수가 서산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공람 실시 ·서산시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인지면 주민 1,053명)를 내세워 보호구역지정에 반대 입장 회신('90. 4, '94. 6) ※ 서산시 예천동소재 예천취수장 - '89.1.1 행정구역 개편시 태안군에 시설물 이관	·태안군에서 추가 상수원 확보(태안 인평저수지)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97~2001)추진 등 광역상수원 확보키로 함으로써('98.5.8) 자체종결 처리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전주 상관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협조 (전북 전주시-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상수원 원당취수장 상류지역인 완주군 상관면 일대의 각종개발사업 증가로 전주시 상수원 오염 가중 · 완주군 상관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전주시에 피해보상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 요구 (보호구역 : 9개마을 26.2km²) - 전주시에서는 한봉단지 조성사업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완주군은 소액으로 수령 거부하고 오폐수 관로 매설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상수원상류지역 상관면 일대를 포함한 '97상수도 기본계획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오·폐수관로매설)추진으로 해소
목포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남 목포시-나주시, 무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상수원(영산강)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 반대 - 지난 '83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건교부(3회), 전남도(5회) 건의 및 시군행정협의회(6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하지 못함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산강 주변 제방 좌우 0.5km내의(L=11.3km, A=10.23km²) 구간에 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대한 재산권 침해등을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1. 15 상수원취수원을 영산호에서 주암호로 바꿈으로써 자동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금호강의 수질보전(대구광역시-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의 생활용수 및 식수원인 금호강 상류지역 오염가중과 영천댐 축조로 인한 하천유지수 감소로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북도에 영천·경산 등 상류지역의 오염시설 입주규제 및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요구 ·경북도에서는 시설입주규제는 곤란하며 공단·축산폐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대구3개소(92만톤/일), 경북1개소(11만톤/일) ·금호강, 신천수계 오·우수분리관 매설 완료(38.4km) ·신천유지용수 확보사업 완료(송수관로 9km) - 1일 10만톤 방류 ·금호강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임하댐 도수로 건설 중(53km, 진도 90%) ·금호강 정화사업 추진 중(진도 70%) : 퇴적오니 준설 130만^{m³}, 호안정비 18.3km ※'97년말 현재 금호강(강창교)수질: 8.6mg/ℓ
낙동강 수질보전(대구광역시-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류지역에 산재한 공단 및 축산시설과 다량의 생활하수로 낙동강 본류·하류지역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던중 '91년 구미에서 대구의 식수원을 크게 오염시킨 『폐놀 유출사고』 발생 -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북도(안동·구미·칠곡)에 낙동강 상류지역의 오염시설 입주규제 및 원인자부담금 원칙 적용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검사소 설치(91.4)낙동강수계 오염도조사- 21개지점, 분기1회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 운영(대구·경북·환경청) - 3개지점, 일일,월간 수질검사 ·환경오염도 합동조사(대구·경북·환경청 등 6개기관) : 14개지점, 분기1회 ·서부하수처리장(39만톤/일) 완공후 확장(39→52만톤/일)건설중(진도 70%) ·고정감시초소 운영(10개소), 오염우심하천 오일펜스 상시 설치(8개소) ·유류사용사업장 유류누출 방지턱 설치(412개소)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지역개발사업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검단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인천시-농림부, 산림청)	·'95. 3. 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서 서구로 편입되자 ·인천시에서는 검단종합개발계획('96.10.15)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건설교통부에 신청 ·건설교통부는 농림부와 산림청에 협의 요청 - 농림부 : 우량농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농지보존 차원에서 불가 - 산림청 : 산림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불가	·인천시의 국토이용변경안을 재조정하여 농림부의 요구사항인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존한다는 조건과 산림청의 산림상태가 양호한 가현산 및 일부 산림을 제외하는 조건을 수용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도시의 자연녹지 확보를 위해 '72. 8월 대구시 도시계획에 의거 경산시 전체면적 5.7%(23.43km 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지역내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를 수혜자인 대구광역시 아닌 경산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97년도부터 관리비 일부를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로 지원 ※국고지원비(전체부담액의 6.6%) - '97년 : 8,670천원 - '98년 : 8,672천원
그린벨트관리 관련분쟁(중앙정부-경기도 관련 시군)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 등 8개 시·군의회에서 청원경찰 단속활동 여비 및 인건비 등을 국비로 충당하여 한다며 5~10% 삭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전액 확보(시·군) -일부 국고지원('97년)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북한산내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청사 신축관련 분쟁(서울시 성북구-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성북구 정릉동 산 1-1소재 북한산내에 공단본부청사를 신축코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북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등의 사유로 신청서 반려('95년) · 공단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기(서울고법, 대법원)	· '97.10.10 대법원확정 판결(청구기각)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려 처분은 적법다당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확장(부산시 강서구-경남 김해시)	· 강서구 가락동은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가락동 주민과 김해시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에 편입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신청('97.8.29) - 부산 강서구에서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김해시 의견에 반대하고, 서낙동권 행정협의회의(2차)에서도 반대	· 건교부 승인시 강서구 가락동 14.098km ² 를 김해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외하고 승인('98.2.18)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정부-주민간 분쟁

지방행 · 재정분야

분쟁명 (분쟁주체)	분쟁개요	해결내용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기준관련(서울시-지역주민)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방향(용적률 등)에 대한 의견 차이 - 주민들은 300~400% 용적률 요구 - 서울시 270% 인정	·주민과 협의,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관련 보완책 강구 - 용적률 270%+15% 인정 등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부과세여부(인천시, 한국선주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시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 하자 한국선주협회,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과세의 타당성 및 벌크화물과의 과세형평 등을 이유로 부과시기 연기 건의	·예상세수가 미미(약 60억)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천시 의회에서 '97.12.30자로 시조례를 개정, 부과시기를 3년간 유보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 개장 반대(문화체육부, 한국마사회-부천시 지역주민)	·한국마사회에서 문화체육부의 설치승인을 얻어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장외발매소 개장('94. 12) 하자 ·사행심조장, 주차장난 등 주거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오월동 신부를 중심으로 반대항의 시위를 하고 부천시의회에서 개장반대 건의안을 가결('95.5.22)	·당초 건물주와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4년을 단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2000년 12월이후 타지역으로 이전 추진중)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주체)	분쟁개요	해결내용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2.3리 반구역 분쟁(남제주군 지역주민)	·'95.8.18 개정 공포된 남제주군반설치 조례상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법정리) 71번지가 행정리인 태흥2리 제7반 구역으로 추가 편성되었는데 '96.11.8 태흥3리에서는 그 지번이 관할구역임을 주장하며 이의조정을 요구함	·분쟁마을간 합의 ·남제주군(남원읍)의 지속적인 중재에 의하여 '97.7.11 양마을은 아래 사항을 합의 - 분쟁대상 지번은 남원읍 태흥3리 관할반구역으로 편성하되 그 지번을 행정리인 태흥2리와 태흥3리 경계구분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함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 구제대책 공동추진(주택업체-지역주민)	·덕산그룹 부도('95.2.27)로 인한 계열사 무등건설 시공APT 공사중단으로 입주 예정자 피해	·'95.2.27 덕산그룹 부도로 인하여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행정기관·업체 및 입주자간 공동대책을 모색한 결과 '98.3.27준공을 하고 전원 피해없이 입주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쓰레기처리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목동자원회수시설 증설분쟁(서울시 양천구-지역주민)	·'93.9. 기존 소각장 시설용량을 150톤/일에서 550톤/일로 증설발표하자 소각장 주변주민들의 반대 ·서울시가 공사입찰을 실시하는 등 사업시행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경하게 집단행동, 교착상태 진입	·1년5개월여에 걸친 분쟁기간동안 7회의 간담회와 설명회, 주민과의 협의회, 진정서, 탄원서, 질의서 등 제출과 서면답변(16회), 유인물과 홍보물 배포 등 ·'93.4.30. 서울시의 주민지원계획안을 주민측이 수용함으로써 분쟁타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분쟁(서울시-마포구 지역주민)	·주민협의체와 협의과정에서 중구·용산구를 처리권역으로 한 시설 설치 반대('95년)	·지역숙원사업기금 60억원(중구·용산 각30억 요구) 부담기로 하고 협약체결 - '98. 9 공사발주
도봉자원회수시설 건설분쟁(서울시-도봉구 지역주민)	·인근주민의 건설 반대('94년)	·음식물 사료화 시설(도봉·노원·강북구)을 우선 건설키로 하고 도봉자원회수 시설 건설계획을 취소
노원자원회수시설 건설분쟁(서울시-노원구 지역주민)	·'92년에 노원·중랑·동대문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다이옥신 발생 등 공해물질의 위해성을 우려, 주민들이 건설을 반대하였으며 ·노원구 자체시설로 축소 완공('96.4)후에도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요구사항 수용을 주장하며 시험가동을 저지	·노원구 자체시설로 축소요구 수용 ·시설보완,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요구를 수용하고 협약체결 후 가동중('96.6.5)
생곡매립장 침출수유출사태로 인한 마찰(부산광역시-지역주민)	·쓰레기매립장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주변 농경지와 서낙동강으로 흘러들게 되자 주민들이 완벽한 보완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고, 을숙도로 반입을 요구하며 반발('96. 7)	·차수막 등 재시공 및 매립기간 약속(2001년 6월), 16억원 보상 등 7개항 합의 ·'97.8.20 복토권 주장 관련, 23억원 보상합의, 향후 4년간 반입가능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구포동 쓰레기소각장 관련분쟁(부산시 북구-지역주민)	· '95.3.1 행정구역 개편(분구)으로 인해 기존의 쓰레기소각장 등 쓰레기소각처리시설 전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이관되어 · 북구 구포동 182-2번지 일원(덕천 배수장옆)에 區쓰레기소각장(195kg/1일) 설치 추진에 주민들이 이전 요구	· 쓰레기소각장 설치장소 이전(구포동 → 화명동), 설치완료로 분쟁 해결
고양시 소각시설 안전성확보에 따른 지역민원해소(경기도 고양시-지역주민)	· 고양시 생활쓰레기소각장의 1단계(300톤/일)시설의 준공('95.11.30)과 가동에 따라 일산구 주민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이옥신농도 등의 검증요구 및 소각시설 굴뚝높이 증설 등을 골자로 한 주민청원을 제기	· '98.9 다이옥신 저감시설보완공사(0.1나노그램이하) 완료
중동폐기물소각장 폐쇄요구(경기도 부천시-지역주민)	· 지난 '95년에 설치한 소각장에 대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다이옥신 측정결과 다이옥신 과다배출(23.12나노그램)로 인한 민원발생 - 환경오염 피해보상, 소각시설 폐쇄, 주민 지원기금 확대요구	· 1차 소각시설 보완후 다이옥신 측정결과 3.28나노그램 확인 · 2차로 환경부 소각시설 기술지원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시설보완 추진중('97.11이후) ·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및 주민 지원조례 개정('98. 5. 2)
수원시 세류동 쓰레기집하장 설치 주민반대(경기도 수원시-지역주민)	·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세류 3동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 집하장('95. 3집하개시, '96.12.27 설치완료)에 인근아파트가 입주('96. 2)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가림막, 지붕 등을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던중 미관저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은 집하장 가건물의 무조건 철거와 녹지공간조성을 요구	· 재활용집하장 설치공사 강행(주민과의 마찰 발생) 세류3동 대형폐기물 집하장(대지 479㎡, 건축면적 252㎡) 준공('96.12.27)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증설계획 반대(경기도 의정부시-지역주민)</p>	<p>·'9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소각시설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95.7.20일 기본용역 수행중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시('96.6.20) 주민들의 소각장 추진반대에 따라 '96. 7. 4일 김천식의 386명의 주민이 “쓰레기 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로 증설철회”의 건을 의정부시 의회에 청원</p> <p>- 환경관련단체에서는 의정부시장 등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청에 고발('97.7.19~'98.1.31 전원 무혐의 처리됨)</p>	<p>·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 협의</p> <p>- 3차회의('97.2.14)에서 소각장 규모 축소합의(300톤 → 200톤/일)</p> <p>- 4차회의('97.3.14)에서 선진지 견학 및 주민 요구 수정 협의</p> <p>- 5차회의('97.6.4)에서 선진지 견학보고 및 소각결정방식 유보</p> <p>- 6차회의('96.6.20) 소각방식결정(스토카)</p> <p>- 7차회의('97.2.23) 주민수혜사항 합의</p> <p>※유선방송시설 설치(2,400백만원)</p>
<p>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반대(경기도 부천시-지역주민)</p>	<p>·'91.9.19 종합처리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97.9.5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농경지보상가 저렴 (가구당 4,300만원 정도) 지역주민 이주대책을 요구</p> <p>- '96.11.9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기각 처리)</p> <p>- '97.3.17 토지수용법에 따라 부천지원에 공탁처리하자 모든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1명은 서울고법에 토지수용이의 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계류중)</p>	<p>·시에서 시공사와 주민대표 모임을 주선 잠정합의 공사진행중</p> <p>- 작동이주 단지로 이주, 공사진행방지 등</p> <p>·서울지방항공청 및 도시과와의 긴밀한 협의로 주민 이주대책 조기 이행</p> <p>·이주단지조성 분담금 및 이주대책비 등 이주관련 예산 기확보</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군포시 산본쓰레기소각장 건설분쟁(경기도 군포시-지역주민)</p>	<p>·'90.11.13 대한주택공사가 비용전액을 부담키로 하고 '91. 8. 7 소각장후보지로 산본동 산 166번지로 선정(200톤/일 규모) ·신도시 입주주민들은 사전공개없이 이루어진 소각장 부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소각장 설치반대(22회) 또는(신도시↔기존도시) 이전을 주장 ·군포시에서는 '94.12. 5 공사착공하였으나 민선시장이 부지를 재선정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부지를 재선정(산본동 산170번지) 추진</p>	<p>·부지 재선정 - 시민공모(14개소)→입지타당 조사 후 우수후보지 4개소 선정→입지 선정위원회에서 2개소 선정→시의회 협의(2회)→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95.12.30) ·제반절차 이행 - 도시계획시설 결정('96.6.14) →G.B 행위 허가('97. 1. 10)→ 4계절 환경영향평가 ('98.7.22)</p>
<p>홍성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 강행에 반대(충남 홍성군-지역주민)</p>	<p>·홍성군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지가하락 토양오염 등을 우려 무조건설치 반대로 '93~'96. 5까지 착공을 하지 못함 - 매립장 : 173,811m² (시설면적 29,693m², 36톤/일) - 침출수처리장 : 70m²/일</p>	<p>·'96. 5. 28 주민합의(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자금의 22개 사업지원 약속) - '96. 5. 31 공사착공, '98.1.7 준공</p>
<p>예산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충남 예산군(지역주민)-시행업체)</p>	<p>·'94. 6. 13 금강환경관리청에 제출된 지정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계획서에 대한 예산군수 조희시 소각시설 입지불가 통보함으로써 갈등 야기 - '96.11.21 사업주가 제출한 농지전용허가 불허 처분 - '96.12. 5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각)</p>	<p>· '97.12.23 농지전용 불허처분 취소판결(대전고법)에 따라 '98.2.24 허가 처분 - 행정소송결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임</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경주시 건천읍 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경북 경주시-지역주민)	·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하여 '94년부터 읍면별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며(5개면에 소형 쓰레기 소각장설치), '96년말 건천읍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동지역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자 인근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	· 법원에 공사 및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승소('97. 7. 8)공사 완료 후 소각장 가동('98. 1) - 소각장 운영인원 2명 채용, 주민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중
고령군 쓰레기매립장조성 주민반대(경북 고령군-지역주민)	· 고령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쌍림면 신곡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추진하자,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피해, 지가하락 등을 주장하며 설치 반대 - '90. 6 쓰레기매립장조성 타당성 조사시부터 부지매입 과정, 공사 착공시('95.12) 무조건 반대	· '96. 9 쓰레기매립장 공사방해중지가처분 패소시부터 무조건 설치반대 입장에서 지원사업 요구를 하며 협의에 응함으로써 상수도설치 등 14개사업을 지원키로 합의(20억 지원요구는 불수용) 후 공사재개, '97.6.1 준공)
사도 쓰레기매립장 사후공사 미비로 주민반대(경남 마산시-함안군 지역주민)	· 마산시가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에 조성하여 '91.1~'95. 7월까지 사용한 쓰레기매립장의 사후공사로 농경지(답)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최종 토사복토 두께가 부족(규정상 0.6m인데 실제로 1.19m복토 →주민은 2m 복토요구)하다는 이유로 민원제기	· 농업용수 공급용 양수장 증축 및 양수기 1대 추가설치 후 '98. 8월경 함안군에 관리이관
밀양 기산일대 혐오시설 집중 주민반대(경남 밀양시-지역주민)	·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의 연계설치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시설을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단지화 필요성 검토과정('96.9)에 발생	· 주민대표와 협의결과 쓰레기소각장 설치 백지화, 타시설수용으로 갈등 해소('96.10)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무안 지역주민 쓰레기매립장 조성반대(경남 밀양시-무안군 지역주민)	· 무안면 지역내 6년간 사용해 오던 기존 고사동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달하자 밀양시가 추가매립장 후보지선정 과정에서 무안면 마홀리 신생동 주민들이 주민지원을 조건부로 승인신청('96. 8. 29) - 이에 시에서는 10억원 보조 및 마을숙원 사업 6건을 지원키로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무안면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96.12.22)반대	· 무안면 신생동 주민대표와 지원대책의 합의('97.4.12)로 갈등 해소 - 지역개발사업비 매년 5억원씩 지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를 주민기금으로 조성, 주민2명을 유급 감시원으로 채용 등
합천쓰레기매립장 건설추진 주민반대(경남 합천군(지역주민-시행업체)	· '95. 10월 포항시에 소재한 창일산업(주)으로부터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산 4번지 일원에 합천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으로 부지매입 과정에서 주민반대('96.11.13)	· 창일산업(주)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 취소
서귀포시 신규쓰레기매립장시설 조성반대(제주도 서귀포시-지역주민)	· 서귀포시 신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예정지인 색달동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시설 조성반대 ('95.10.10) 반대투쟁위 결성	· 쓰레기매립장 조성 관련 색달주민 대표와 협약('96.8.1) - 쓰레기매립기간 10년, 도로확장 4.4km, 외곽도로개설포장 1.4km, 공부방 1동건립, 마을진입로 확장400m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반대(제주도 서귀포시-지역주민)	· 서귀포시 영천동소재 신호공동목장 조합 소유의 쓰레기매립장 부지 임대기간('96.6.9)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매립장 조성까지 기간('97.6.30)연장사용 반발	· 서귀포시와 영천동 주민의 이행합의서 교환('96. 7. 10)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광양 죽림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반대(전남 광양시-지역주민)	· 광양시(당시 광양군)에서는 기존의 초남·대안동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95.12월로 사용 종료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6개소를 타당성 조사후 죽림·망덕 2개 지역으로 압축 죽림 바닥골로 '93.7.27 최종 결정	· 대주민 합의문(13개항목)에 의거 관련부서에서 계획수립 착실히 추진 중임 - 광양시에서는 실시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성 협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계획대로 추진
장흥군 농어촌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합의(전남 장흥군-지역주민)	· 님비현상에 의한 무조건적 반대 - 악취, 매연으로 인한 생활피해 우려	· 매립장설치 추진위구성(16명)운영, 주민과 협의 매립장설치 합의
장성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민 반대(장성군-지역주민)	· 폐광산 지역을 선정, 매립장 설치추진(1991) -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본격화되자 주민들이 식수원오염 및 혐오시설을 이유로 반대, 집단행동	· 군수호소문 배포 및 군수와 지역주민간의 마라톤 협상지속 · 매립장 공사완공('96.9.20)
춘천시 혈동리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민반대(강원도 춘천시-지역주민)	· 춘천시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 동산면 조양리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진입도로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흥천군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및 팔봉산 국민관광지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하자 · 적정후보지 15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신동면 혈동리 지역(시선정지역)으로 변경시행('96. 8. 8)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	· 주민설명회, 주민요구사항 수렴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정화시설로 인식되도록 주민설득 및 완벽한 위생매립장 조성 약속후 공사추진 ('97~'99) - '96. 11. 5 주민과의 협약 및 동의서 체결
동해시 폐기물종합단지 조성반대(강원도 동해시-지역주민)	· 기존 쓰레기 매립장(대진동)의 사용 한계 도달로 신규쓰레기 처리시설후보지 8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쓰레기매립장 (대진동)과 신규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지역(망상동 - '94.10. 24 시청 조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확정) 주민의 반발 - '95.1.4~4.14까지 100일간 생활쓰레기를 시가지에 적치상태	· 시에서 주민과의 협의 33회, 의회·유관기관과의 협의 16회 등을 통해 협약분위기 조성 · 향후 5년간 지원사업비17,901백만원 지원 협약 체결('95.4.14)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태백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반대(강원도 태백시-지역주민)	· 태백시의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만료(포화상태)되어 신규매립장 후보지로 연화동 지역을 선정하자 환경오염과 혐오시설입지로 주민피해를 우려하는 연화동지역주민의 반발(반대투쟁위원회 구성 집단 행동 10여회)	· 시와 주민대표간 실무약정서 및 합의서 체결('98. 2. 3)후 공사착공('98. 8. 4) - 지역발전기금 30억원을 년차적으로 지원 약속
당진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련 분쟁(충남 당진군-지역주민)	· 당진군, '95년 석문간척사업지구내 10만8천9백여평을 농림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인수인가 취득 · 국비와 도비지원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97.12. 기초조성공사 착공추진 · 공사과정에서 인근지역주민들이 간척사업지구내 농지무상 분양, 쓰레기규격봉투 매매차익금 50%환원, 축산단지 조성 임대권부여,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 등 요구하며 공사방해	· 당진군, 주민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 설명 · 주민투표 (전체 263세대) - 찬성 156표, 반대 58표, 기권 1표, 무효 18표로 쓰레기매립장 건설허용
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반대(진주시-지역주민)	·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 밀집으로 주민반대	· 주민협상 46회 · 주민보상 - 인접피해지역: 암물마을 세대당 2500만원, 새담마을 2000만원 - 간접피해지역: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경기도 화성산업 폐기물처리장 건설관련 분쟁(경기도 화성군-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3. 화성군 주곡리에서 발생한 어패류 집단폐사사건이후 집단행동 ·환경관리공단과 주민합의하에 국립환경연구원, 수산진흥원, 화성군청, 인하대 해양학과 합동조사반 구성, 조사활동 전개 ·조사결과, 어패류의 폐사원인이 화성사업소에서 처리되지않고 방출한 화학물질때문이라고 결정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공해, 유해가스배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성사업소, 성립산업, 주민간의 16개항 합의 - 성립산업이 합의서 서명거부 ·주민들은 선철수후 피해조사 주장하며 집단행동 ·공단측은 선피해조사후 문제가 있으면 철수하자고 주장 ·화성사업소 정상화방안에 대한 찬반투표 - 투표결과, 화성사업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의 - '91.12. 환경관리공단과 주민대표간의 최종합의서 교환
김포 수도권광역쓰레기매립지건설 분쟁(경기도 김포(지역주민)-환경부,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86. 서울시가 수도권지역의 광역쓰레기매립지 설치계획 ·환경부,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위생매립지 건설계획 - 수도권지역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일원 해안간척지 627만평에 매립지 조성 - 계획초기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구성을 통해 갈등무마 ·'93. 산업폐기물 반입이 허용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심화 - 산업쓰레기의 반입허용 발표와 침출수누출문제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점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5.15. 지역주민들이 산업쓰레기 반입 반대 추진위원회를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로 변경 - 주민협상대표를 선출하여 집단투쟁으로 양상변화 ·'92.5. 수도권매립지 실무협의회와 백석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상 - 민간연구소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을 통한 협상진행 ·정부, 산림보전 및 경지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민요구 수용제의,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상노력 제의상태
김포 학운리 특정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관련 분쟁(경기도 김포-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3.15. 김포 학운리 특정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사업 계획발표에 지역주민들은 산업특정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들은 농공단지 건설로 알고 있다가 소각장건설이 20%진행된 상태에서 진상을 알게 됨 ·'94.12. 주민들이 건설추진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 - 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허가과정의 부당성, 입지선정의 부당성 항의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한부 공사정지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운리 소각장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000 군수가 당선되면서 분쟁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경산 하양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주민반대(경북 경산시-지역주민)	·'96. 10월 경산시에서 하양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 시유지인 하양읍 대곡리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의 반대	· '97. 7월 대상지역을 국유지인 하양읍 사기리지역으로 폐기물처리장 예정지로 변경 선정 - 구미국유림관리사무소와 하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편입 토지보상금협의 및 부지매입 ('97. 11) - '98. 6. 2 공사착공
성주 대항리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민반대(경북 성주군-지역주민)	·성주군은 농촌지역의 비위생적인 간이매립장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성주읍 대항리지역에 대규모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하자('95. 4. 28)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쓰레기장 건설 반대('95~'96까지 집단시위 3회, 반대진정서 제출 편입주지 승낙 거부 등) ·성주군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97. 6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다른장소로 이전을 검토기로 하고 입지선정 기초위원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음 ·대규모 쓰레기장이 건설되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가속화와 인근지역 토지가하락 등 피해가 있으므로 쓰레기장 건설반대	·성주군,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다른 장소로의 이전 검토중 - '97.6월이후 대항리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97.6. 성주군은 군민, 사회단체대표, 여성대표, 군공무원 등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성주군환경기초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 입지조사에서 최종선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방법으로 사업추진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남원시 주생면 광역쓰레기매립 장 조성 주민반 대(전북 남원시- 지역주민)</p>	<p>· 남원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재선정('96.11.29)에 따른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며 주민반발 - '97.8.29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공모(15개소)한 후 환경성조사 용역의뢰</p>	<p>· 지역주민과 2개월여에 걸친 대화노력으로 주민과의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 매립장을 '99년말까지 사용, 감시요원을 통한 위생매립지 감시체제 구축 - '98.12월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타 지역으로 선정추진, 미선정시 이후의 쓰레기반입 중지 -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쓰레기매립장의 토지 추가매입 - 침출수 피해방지대책 수립 - 현 매립장 매립완료 이후에는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정비협의</p>
<p>전주시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조 성분쟁(전북 전주 시-지역주민)</p>	<p>·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856-1에 위치한 21,152평 규모의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종료('96.12.31)에 따라 전주권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시('97.5.29)까지 연장사용계획에 대하여 주민불편 및 피해보상 차원에서 매립종료 후 부지사용권을 마을 양도와 5억원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쓰레기반입저지 · 매립장 사용기간연장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전주시의 현금지원 등 부지사용권 양도 불가입장에 주민 반발</p>	<p>· '97. 1. 9 주민과 협약(마을주변 조경공사, 체육시설 설치, 상수도 공급, 보상금 3,033천만원 등) 및 '97. 5. 29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로 해결 ·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하류 지역 토지매입 완료 ·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로 이후 20년간 침출수관리 및 매립종료후 3년까지 월1회의 지하수 수질조사 등 매립지 사후관리 철저</p>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 건설(경기도 의왕시-지역주민)	·'96.12.30.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97.4.1. 공사착공 ·'97.5.6.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 발족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냄새가 많은 혐오시설이고,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상태에서 처리시설의 입지는 지가하락으로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초래	·의왕시장 및 공무원이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수차례 가짐으로써 설득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피해보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제의 - 처리장내 시장관사 신축 - 처리시설의 미관을 고려한 건설 및 배구장, 축구장 등의 동시 설계로 처리시설의 환경홍보교육관화 - 환경을 우선한 기술방식도입 등
포항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반대(경북 포항시(시행업체)-지역주민)	·지난 '94. 2 (주)명신산업에 민명화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시설을 현대화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립을 추진하자(북구 흥해읍) 이 지역주민들은 수질오염 피해와 도시화로 인구밀집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사유로 도축장 설치반대	·포항시 관계공무원 및 사업주체 연대 주야간 및 장소불문 수십차례 민원인 개별상담 및 이해설득하여('97. 2.22 주민 동의서 징구) 착공
영천 하수종말처리장 무산위기(경북 영천시-영천, 경산시 지역주민)	·영천시가 금호강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자, 대상지역인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인근 하류 지역에 위치한 경산시 와촌면 용천대 주민들이 토지지가 하락, 생활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를 내세우며 설치반대('95~'97)	·토지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가처분 승소(대구지방법원 - '97.4.7) 후 신대주민 8명이 시장, 시의원과 면담하고 주민숙원사업 (10건) 약속('97.4.30)으로 공사재개('98.1부터)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경북 고령군-지역주민)	·고령군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95. 7. 28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자 대상지역인 고령읍 고아리 주민들이 각종 환경오염, 주변지역 지가하락 등 피해를 내세우며 설치 반대	·고령군에서 사업설명회, 타지역시설견학 등을 통한 이해공감대 확산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키로 합의 ·마을안길 포장, 악취방지를 위한 녹지 공간확보 등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정선 분뇨처리장 설치반대(강원도 정선군-지역주민)	·정선군 관내 기존 3개분뇨처리장이 10년 이상 운영되어 운영비 과다 소요 및 노후로 악취발생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 ·정선읍 용탄리 분뇨처리장에 1일 70㎏ 규모의 액상부식법 현대화시설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자 - 확장반대 및 이전을 요구하며 집단반발('96.12~'97. 4)	·토지, 지장물 보상 등 협의완료 공사 착공 ('97. 9) - 영월댐 건설시 수물지역으로 수물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요구 등 수용
제주시 도두동 주민 하수종말처리 고통호소(제주시-지역주민)	·하수처리장 인접마을인 제주시 도두동 시수마을 (13가구 22세대 거주)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시설의 마을 근접설치로 인한 악취발생을 우려, 반발 - '94.12 7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착공시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복지회관 사업 비지원(344백만원) 등 주민 합의('96. 8.7) - '98.12 하수처리장 증설 및 마을회관 준공 예정
남양주시 수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경기도 남양주시-지역주민)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입지 선정 문제와 하수처리구역 변경에 따른 분쟁발생 ·당초 수동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을 수동면, 화도읍 구암리, 가평군 대성리 지역까지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부지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주민들의 건설반대로 하수처리장의 하류지역인 가평군 대성리, 화도읍 구암리 지역을 처리구역에서 제외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으로 해결 - 주민친화형 시설설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다목적 운동장 설치, 처리장 주변 및 구운천변을 산책로로 조성, 주민편익시설과 제방 우회도로 포장, 연결도로 개설, 교량가설, 주차장 등 건설계획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수정 추진중
서귀포시 분뇨연계처리시설 추진사업 변경요구(서귀포시-지역주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98. 2. 2) 분뇨연계처리(서귀포시 서부처리장)에 대한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	·'98.11. 서귀포시와 예래동 개발위원회의 간담회 개최 -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사업계획을 조건없이 수용키로 결정 ·'98.11.12. 서귀포시 분뇨처리시설 변경계획 승인(제주도) ·'98.11.28. 공사발주, '99년 하반기부터 분뇨연계처리시설계획 추진예정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익산시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 분쟁(전북 익산시-지역주민)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왕궁특수지역(나환자집단정착촌) 200여농가가 경영하는 대단위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생활하수(1일 3천톤)를 적정처리하여 익산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 예방, 하류지역 농촌 생활환경,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처리시설 설치추진에 지역주민 반대	·현재 축산폐수시설 완공되어 시험가동 중 ·인근지역의 오염원을 처리하게 되어 주민들이 우려했던 피해보다 더 높은 환경개선효과 기대
속초시 대포동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분쟁(강원도 속초시-지역주민, 환경단체)	·'84.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대포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93. 부지선정 및 결정시 주민들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반대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선정부지가 인근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와 인접하여 환경적인 피해우려, 인근 해수욕장, 양식장 등 주민에게 경제적인 피해초래, 부지선정과정에서 탁상공론적 행정에 대해 반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추진 - 현재 총공정의 66%완료 상태 ·'99.7. 부분시설 가동을 통하여 청초호 주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대비, 2000.12.31 완성가동 예정
남제주군 동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반대(남제주군-지역주민)	·남제주군 남원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선정 ·사전에 주민에게 설명없으며, 입지선정기준 불합리, 최종 처리수에 의한 어장 황폐화 등을 이유로 반대	·남제주군, 주민과의 대화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설명 ·'98.1. 사업착공, 현재 공사추진중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위험 및 기피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침례병원 영안실 위치에 따른 주민 반대(부산시(침례의료재단)-지역주민)	· 침례병원측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 동구 초량에 소재하는 병원이 노후화 및 협소하여 새로이 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 1995-111호('93.5.3)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도시계획내용을 침례병원 관계자가 관계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영안실이 주차장동 7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 주민들이 병원측에 영안실을 지하로 위치변경 요청	· 영안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
부산시 영락공원 납골당 증설계획에 주민반대(부산시-지역주민)	· 현시립영락공원(화장장, 공원묘지, 납골당)내에 납골당(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82평) 증축계획 추진('96. 6) - '93년 영락공원내 시립화장장 설치 건립 후 당초 약속한 주민숙원사업 47건 해결요구	· 주민과 협의 및 계속 지원약속으로 공사 착공('97. 7. 25)
부산 다대변전소 설치 주민반대(부산시 사하구-지역주민)	· 한국전력공사에서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산12-4번지의 2필지에 변전소 설치 추진 · 주민들이 아파트와 10m밖에 안되므로 건립장소 이전요구(한전측에서는 아파트 건립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전불가 주장으로 갈등 야기('95. 8)	· 주민과 회사간에 약정 체결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98. 5. 2)
한국티타늄공장 건립반대(울산 울주구(시행업체)-지역주민)	· 한국티타늄 공장이 건립될시 이산화티타늄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공해배출을 염려한 지역주민과 공해추방운동단체 및 인근 울산시민과 언론 등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당공장의 건축물 건립 반대 ('96. 2)	· 환경관련 단체 및 주민 이해설득 공장건립(환경영향평가 등) - 공사가동중에도 환경관련 준수사항 불이행시에는 공장가동을 중지할 것을 조건부로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 ('98.4.24)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LPG충전소 설치 반대(경기도 고양시-지역주민)	·고양시에서 일산구 백석동 임광APT 주변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이 집합되어 있는 곳에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하자 주거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민들이 민원 제기	·공사방해 가처분소송(시공자가 주민 상대로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의정부지원)
부천시 원미구 장례식장 건축반대(경기도 부천시-지역주민)	·부천시 원미구 준의동 193-1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의 장례식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신청('96.6.27)되었으나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 및 자녀들의 교육문제, 주위의 교통상황 및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수차례 집단행동 실시로 건축허가신청 반려('96. 9. 3) ·건축주가 행정심판청구(기각), 행정소송을 승소로 건축허가 처리('97.11. 10)되자 건축주는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은 공사진행을 방해	·주민대표와 건축주간에 합의이행각서 작성 - 건축주 : 부천시에서 부지매입 후 건축주 부지와 교환 및 손실비용 배상 - 주민대표 : 건축주 요구가 부천시에서 수용하지 못할 경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음 · 부천시에서 건축주의 요구조건 수용할 수 없게되자 주민들도 단 행동을 자제
포항교도소 건설 주민반대(경북 포항시(법무부)-지역주민)	·법무부에서 재소자의 격리수용 및 교화를위하여 북구 흥해읍에 교도소 설치를 계획하자('96. 9) 인근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은 생활여건 변화와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	·'97.10.30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산정방법에 협의 평당 17만원 씩 보상 · 토지소유자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토지평가사가 산출한 토지보상가를 평균하여 보상기로 합의
거제시 고현항 폐유저장시설 설치분쟁(마산해양수산청, 경남 거제시 지역주민)	·폐유저장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인근 주민 및 횡집, 상가 등에서 기름냄새 및 오염등의 이유로 거제시 및 주민들이 시설설치 반대 -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96. 8. 31 한성 환경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6. 10. 2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주민집단 반발 - 주민들은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 및 상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상권상실 및 폐선박 등에 의한 2차오염을 우려 반대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설치계획 취소 - 거제시에서는 폐유저장시설 불허 처분하고 IBRD차관 5억원을 반납('97.12.31)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거창양돈단지 설립 주민과 마찰 (경남 거창군-지역주민)	·양돈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오염을 우려 양돈단지 조성 반대('97.2.23)	·군수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규모 축소 준공 - 15,000두 →10,000두
성산읍 난산리사격장 설치반대(남제주군-지역주민)	·제주도지방경찰청 사격장 허가신청 ·남제주군,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중 사격장이 안정성,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농경지 오염 등 환경피해 우려로 주민반대 직면('97.7.19) ·남제주군, 사업시행자 측에 사격장 설치에 따른 안정성, 소음, 환경오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토록 통보 ·이에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97.10.22 성산읍 난산리에서 제주도 열린민원법정 제소, 열린민원법정 개최('97.11) - 남제주군에 민원해소대책과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한 이후 국토이용계획 재변경여부결정 권고 - 사업자에게 당초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시 개발계획도와 유사하게 시설배치 및 사대방향 재조정추진 권고, 사업자 측에서 사격장 설치기준 및 국제사격연맹 공인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 불가주장 ·'98.1. 국토이용계획 및 결정절차 취소 통보로 집단민원 해결(제주도)
인제 기린면 군복지회관 건립반대(국방부-강원도 인제군 지역주민)	·국방부, 인제 기린면 현리지역에 영외매점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인제군 기린면 번영회, 지역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복지회관 설치반대	·'98.4.28. 국방부 중앙경리단의 입찰강행 - 복지회관 신축공사 낙찰, 공사진행 ·지역주민들은 부대장이 복지회관 신축 후에도 지역상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설득을 받고 있으나, 부대장 전출시 변경에 대해 우려
동해시 공설묘지 조성반대(강원도 동해시-지역주민)	·동해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예정지구를 '95.12. 20 시의회에서 동해시 단봉동 산 46번지 일원으로 결정(의결)함에 따라 지역주민 반발	·마을운영회와 협약서 체결(공설묘지 조성후 마을지원금을 3년동안 20억 원 연차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11건 해결약속)
고성 명파지역 원전 및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통상산업부-강원도 고성군 지역주민)	·'96.1.19 한겨레신문에 고성군 통일전망대 근처에 10여기의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원전단지 조성계획이 보도됨으로써 고성군 5개읍면 주민반발 및 반핵대책추진위원회 구성('96.1.17)	·군의회에서 관계기관에 공식문서 회신 요구('96.5.28) - 통산부, 과거처, 한전(검토한 바 없음) 통보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나주시 장의시설 건립 주민반대(전 남 나주시(시행업 체)-지역주민)	·적법한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지역 주민 반대	·건축물 사용승인 반력에 따라 전라 남도에서 행정심판청구로 행정심판 위원회의 인용재결로 건축물 사용 승인함
곡성 석유비축기 지 건설반대(한국 석유개발공사-전 남 곡성군 지역 주민)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역주민들이 문제삼아석유비축기지 건설반대('96. 2.11 이후)	·주민대표와의 합의서 작성('97.4.18) 으로 해소 - 주민복지기금을 11억원 보상, 운영 과정상 주민피해발생시 이주대책 완전보상 조치 등
진주이현발전소 건설관련 한전과 주민마찰(한국전 력공사-지역주민)	·진주시 서부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 른 신규전력수요에 대비 변전소 신 설고시(통산부 '96-398호)로 사업착수 과정에서 주민 반대 - 행정심판청구(각하)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진정(법적하자없음을 회신) - '97. 12 착공시 실력저지로 공사 중단 ·이현변전소 신축위치 변경요구(이현 동 611-2번지 일원 6,787㎡)	·주민과의 면담, 간담회, 설명회 개최 ·'98.11. 공사재개 - '98.10.31. 한전은 이현동 주민들에 게 1억6천만원의 장학재단 설립운 영 협의함으로써 분쟁해결
굴업도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과학기술처-지 역주민)	·'94.12. 과기처장관이 굴업도 핵폐기 물처리장 입지계획 공식발표 ·부지선정지역인 굴업도 주민들의 이 미 동의를 얻은 상태였으나, 인근 덕 적도와 인천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운동 전개 - 입지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대	·'95.10. 자원연구소의 지질조사 - 조사결과,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의 재검토 발표 ·'95.12. 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백지화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강화석모도 화력 발전소 건설백지화(한국전력공사-강화도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은 장기전력수급계획 의거, 강화도 석모도를 최적입지로 선정 - 지점세부조사 실시 · '96.10. 언론보도로 석모도화력발전소 건설추진이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강화도 지역사회단체, 보문사 등이 연합하여 반대.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바다오염, 고압전선에 의한 피해, LNG폭발 위험성, 지가하락 등 지적 · '97.4. 강화지역내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석모도화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 추진위원회 결성,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97.3. 24 한전은 화력발전소 계획백지화 발표 · 강화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의 계기 - 강화그린프로젝트 구상제시로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방향 제시
경북저유소 건설 주민반대(대한송유관공사-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지역에 경북저유소 건설을 계획하자, 지역주민들은 설치 대상지역에 지하에 고압선이 연결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저유소 건설 반대(칠곡군에서는 적극 유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11. 6 주민대표와 대한송유공사 참석하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인 마을 회관 건립, 상수도 공급, 잔여지간 통로개설 등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기로 함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사회복지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설치 반대(부산시 기장군-지역주민)	·부산광역시 편입이후 도시계획관련 각종 인·허가가 규제되어오다 정관면 일원에 일시에 다수(3개소: 현대, 읍의마을, 새희망요양원)의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코자 민원신청이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 피해의식 고조('96. 7) ·기장군이 민원서류를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 반려처분하자 『읍의마을』측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고발('96. 8)	·부산광역시장(재결청)의 직접처분으로 전용산림을 용도변경 승인함으로써 종결
노인건강치매센터 건립 주민반대(부산시-지역주민)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건강(치매)센터 건립추진	·사업설명회(4회) 등 주민설득으로 치매센터 건립 완공('98. 3. 27)
달서구 청소년수련관건립 주민반대(대구시 달서구-지역주민)	·'95년부터 달서구 본동 본리공원내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를 추진해 오던중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와 건물안전을 우려한 인근 송현APT 주민(80세대 171명)들이 민원 제기	·수련관위치 변경(본리공원내 → 상인동 앞산) - 수련관: '97.9 착공, '99년 완공예정
상북 등역 노인병원건립 반대(울산시 울주군-지역주민)	·신청지는 간월산 군립공원과 연결해 있고 유원지인 작천정의 상류에 위치하므로 노인병원 건립시 관광객 감소, 지가하락, 하천오염, 협소한 진입로로 인한 교통혼잡,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인근 등역리주민 및 단체에서 병원건립을 반대하고 있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반려키로 심의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주민대표와 신청자인 송암의료재단과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취소키로 기협약)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 반대(경기도 광주군-지역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에서 천진암 성역화에 주변 정화사업 지원지시('94.6.20)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성 검토('94.7.11), 공공시설 입지지정승인('94.8.2),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공사 입찰('96.12.4), 사업인정 고시('97.10.2, 건교부고시) 등 추진 중 · 도립 우산리 청소년야영장 입지승인 과정에서 현지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관청에서 특정종교단체의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방적·독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의 계기로 인한 주민반발 - 보상금 현실화, 이주대책 최우선시공(근린 생활시설 가능부지로 이주단지화), 마을공동 회관 건립 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사업계획수립 이후 수많은 관계민원을 주민과의 협의·대화 ('94년 이후 현재까지 50회) 과정을 거쳐 95%의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 도로개설 및 토공 등 공사추진중(공정 10%)
<p>전남 교육청의 상록수인근 청소년수련원 건설반대(전남 고흥군-지역주민, 환경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362호(상록수림)에 인접하여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함에 있어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해당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고시('95.12.7 내무부) - 공원사업시행허가('96.3.23, 국립공원관리공단) - 감사원 감사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시정 통보('97.5.1- 주민 및 환경단체의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조치지시에 따라 건축높이 및 층수하향(3층→2층) 조정으로 분쟁해소 ·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시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검토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선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해남 정신병원 설립 주민반대(전 남 해남군(시행업 체)-지역주민)	· 신혜정신요양원 대표 김정길이 정신 병원을 건립코자 '96. 3월 해남군 옥 천면 영신리 산 53외 7필지에 농지전 용 및 산림훼손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혐오시설,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신병 원 건립을 반대 - '96.3.16 주민반대 이유로 불허가 처 분 - '96.6.11 전남도 행정심판 재결(불 허가처분을 취소) - 해남군에서 농지전용허가('96. 7. 1), 산림형질변경허가('96.7.22), 병 원폐수배출 시설 허가('96.7.30)	· 옥천면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원만 히 합의됨으로써 병원설립을 계획 대로 추진하고 합의사항 이행('98.4.2 2 혜민병원 개설허가)
노인전문병원 건 립 주민반대(전남 무안군(시행업체) -지역주민)	· 사회복지법인 평암보육회(대표자 이 원국)에서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10 09외 1필지에 노인전문병원 설립계획 을 노인성 치매전문병원으로 인식한 지역주민들(1,000여명)의 집단 반대로 민원발생 - '95.3.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추천을 받아 농지전용허 가 신청('95.4.24 농지전용허가) - 주민들이 반대진정으로 2개월내 제2장소를 선정 주민대표와 협의 하겠다는 징구 후 건축허가 처분 - 보육회측에서 제2장소를 선정치 않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주민 집단 반대	· 주민과의 간담회, 대화 를 수차에 걸쳐 실시 제2장소(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알선으로 해소('95.11.30)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도로개설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장미아파트앞 도로확장관련 분쟁 (울산광역시-지역주민)	· 북부순환도로(태화동-북산동) 확장에 따른 소음·진동·일조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 요구	· 도로선형 변경으로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확대 확보(2.2m→7.5m) 등의 주민합의('98.2.18) - 시공자가 아파트 건물도색, 어린이 놀이터포장, 정문이설 등 설치
철산지하차도 공사반대(경기도 광명시-지역주민)	· 광명시 철산동 철산대교앞 교차로의 평면 교차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길이 335m, 폭 17.6m의 입체화시설인 지하도 건설('96.11) - 인접 고층아파트의 안전에 영향을 우려 지하도 건설반대하면서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용역결과(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97.5.6)를 불신한 채 아파트 자치회에서 안전진단을 용역의뢰(한국재난연구소'98.1.9)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 등을 통해 백지화 요구	· 주민설명회 및 안내문 배포(4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 차수벽 깊이를 민원해결차원과 안정성을 위하여 검토보강 시공 - 하수암거의 유로변경 이설키로 합의('98.4.14)
구리시 국도4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 주민반대(경기도 구리시-지역주민)	· 국도 47호선 연결도로와 경춘선 철도 교차지점(태능~이화염직구간 700m~갈매동지역) 국도고가차도 계획으로 인한 갈매동 생활권의 단절 등 지역발전 저해와 보상이 저렴을 이유로 재검토 요구('95. 9) - 제방축조식 도로건설 및 고가도로설치 반대(지하차도 요구) - 2개소이상의 진출입로 설치 및 평면교체로 설치 요구 - 용지보상 재감정 요구 등	· 구리시에서 대안제시 주민과 협의해결 - 도로계획 성토고를 낮추고, 평면교체로 건설 수용 · 국도 및 철도 횡단지하차도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 기술심사위원회에 의뢰 검토한 결과 기하구조상 설치 불가하다는 기술심사를 이해시켜 고가도로설치키로 합의(경춘선 직결 복선철도공사시 재검토) - 용지보상은 재감정결과에 따라 보상 · '96.4.20 공사계약 착공, '98. 7 준공개통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p>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건설 주민반대(광주광역시-지역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 8 광주시 제2순환도로는 도시고속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설한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 '90. 8 제2순환도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93. 8월 1구간 (동광주 I. C-소태I.C, 8.41km)에 대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1구간 건설을 추진 · 현재 추진중인 1구간 잔여구간(두암택지~ 소태 I.C, 5.632km)에 대하여 광주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95. 5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 환경권 침해, 무등산 생태파괴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2구간, 3구간, 4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1구간 착공을 전면 유보 요구 - 제2순환도로를 지하차도로 건설할 것을 요구 · 광주시는 도로구조불량과 공사비 과다 등으로 지하차도 건설불가 설득하고 전문기관에 따라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는 주민대표와 협의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의뢰 -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방안을 확정키로 주민과 합의 · '98.9. 대한토목학회에서 타당성 검토 시행 - 대안으로 도로높이를 낮추는 조정안 제시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수용 합의함으로써 분쟁해결 - 세부적인 사항은 대한토목학회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주민과 협의하여 공사정상 추진계획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부천시 내촌로 개설 주민반대(경기도 부천시-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 중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변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이익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내정-오정동간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인 내촌로 건설계획 ·'96.8. 공사착공. 주민반대로 공사중지 ·주민들은 지하매설물공사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영업행위에 지장초래, 고가도로 설치에 따른 점포이용 불편으로 영업수입감소 예상, 용벽설치로 지가하락 예상 등을 이유로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 해당피해주민들에게 이주대책 수립 및 해당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도시계획사업(공원)목적으로 한성연립 매입 - 상동택지개발지구내 25.7평형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 제공, 1세대당 보상액 65,000천원 제공 ·현재 공사 진행중
천상지구 진입도로 개설관련 분쟁(울산광역시-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상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기존 진입로 협소로 주민통행불편 초래 ·이에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아파트시공업체에서 사업비를 공동부담하여 고가도로 개설공사 시행('96. 6) ·시공사(기산) 부도로 공사중단 및 주택업체 자금난으로 고가도로 부담금 납입 지연 ·'97.9.27 (주) 기산 고가도로공사 합의해약 후 (주)신한건설에서 '98.2 공사 재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고가도로 조기 개설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철도 ·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위치변경에 따른 집단반대(건설교통부-지역주민)	·'95.12.28 건설교통부에서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을 장성군 동화면에 입지확정하였으나 동화면 주민의 반대로 본사업(부지 45만평, 7,577억원 소요)을 장성군 서삼면으로 위치 변경 - 사업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	·'97.1.21 서삼면으로 입지확정(건교부) -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 후 본공사 실시(SOC등 기반시설 병행추진)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 정비창 건설반대(건설교통부-지역주민)	·1994년초 건설교통부에서 고양시 강매동 일원 38만 7천여평에 경부고속철도 서울 차량기지정비창 건설을 결정함에 따라 인근 강매동·행신 택지개발지구 주민집단 민원발생 - 주민들의 반대속에 '96. 10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토지보상협의(처음에는 보상가가 낮다고 반대, '98. 5 현재 보상 완료) - '97. 8 서울고등법원에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음, 수질 및 토양 오염 등 환경피해를 우려, 반대 노력에도 토지보상 완료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광역 상수도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평택시 아산공업용수도 송수관로부지 매입사업 지연(수자원공사-지역주민)	·아산공업용수도 송수관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매입관련 민원발생 - 아산수도건설사업단에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보상가 산정 통보 - 민원인(남상목)은 보상가 저렴 및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정처리 과정에서 민원수렴 차원에서 잔여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제출)	·민원인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반 서류를 한국수자원공사 아산수도건설사업단에 제출하고 보상금(잔여지 보상금 포함)을 수령('97.8.11)함으로써 동민원은 종료됨('97.12 매설공사 완료)
천상정수장 편입부지 보상금 상향조정 요구(울산광역시-지역주민)	·천상정수장 편입부지에 대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협의를('97.2.11)에 주민들이 동일규모의 농지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액 감정평가후 재협의 보상('98.4.29)
남양주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취,정수장 건립반대(수자원공사-지역주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외부읍 도곡리 일원에 광역상수도 5단계 취수장 및 정수장건립 추진(1일 20만톤, 522억원) ·시민들은 취수원을 댐 상류지역으로 이전 및 이주대책 등을 요구('94. 5. 6)	·지역주민공청회를 개최 사업설명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 협의 ('94.8~'97. 5) - 정수장 부지내 경작농 및 거주민 이주 대책마련 및 편입토지에 최대한 보상 등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댐건설 및 관리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진안 용담다목적 댐 건설반대(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권 용수공급을 위한 용담다목적댐 건설 추진('89년) - 유역면적 및 저수량: 930km², 815백만톤 - 수몰면적 : 38.18km²(1읍, 5면) - 이 주 : 2,864세대 12,616명 · 주민 재산권행사 및 지역개발의 제한, 생활환경 악화로 댐건설 반대(충분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요구) < 주요 갈등상황 > - '91.11.14 주민들의 동의없는 사업추진과 과대한 댐규모 등을 이유로 한 국회청원으로 사업중단 ('91.11.14 주민청원기각) - '92충선시 대안댐 타당성 검토공약으로 공사중단 - '93년 보상시 전지역 일괄 보상후 공사착수 및 공특법 개정 요구로 공사중단 - '97년 수몰주민들이 미보상 토지에 화훼류를 식재하고 물건조사를 방해, 2개월간 단식 농성, 해산과정에 서 사망 25, 부상자 25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건설 피해주민을 위한 이주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해결('97. 8. 15)
대곡댐 건설반대(수자원공사-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곡댐 건설에 따른 상류지역 지하하락, 재산권 규제, 대곡댐 건설해당 유역수량이 부족 등을 이유로 백지화 요구 · 수자원공사의 수리계산에 대한 불신 및 재산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상물건 실태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 -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침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수질보전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청도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상류지역 주민반대(수자원공사-지역주민)	·대구시와 경북(경산·영천시, 청도군)의 상수원인 운문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상류 지역에 위치한 청도군 운문면과 경주시 산내면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계획하자, - 수혜혜택이 전혀없는 경주시 산내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반대(산내면 주민 2,577명, 군의회에서도 반대의견 채택)	·경주시 산내면 주민들에게 용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설득,협약('97.9.24)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협약내용 > - 보호구역지정 축소 (12.3km ² →0.17km ²) -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소규모하수처리장 90개소 설치를 '98~2011년까지 건설
수원천 복개공사 중지예 따른 논쟁(경기도 수원시-지역주민)	·수원시는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도시로 충효의 사상과 유적이 많은 문화의 도시이며 또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도시가 광역화되어가고 있으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어 이의 해소와 도심 지역 개발을 위해 수원천 복개공사를 추진하던 중('91~'94년 1단계 790m 복개, '95. 3~ 2단계 480m 복개공사 착공) 문화재관리국,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원천 복개공사가 중단('96.2.15 문화재관리국에서 수원시에 요청)되어야 함을 주장함에 따라 '96. 5. 21 수원천 복개공사 중지를 결정하자 기존 도심지역 개발 당위성을 주장	·도심정비 10개년계획('96~2006)을 수립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추진(총 1,512억원 투자) - 천변도시계획 도로확장, 주차시설확보, 천변상가이전, 재래시장활성화, 지역개발 사업 등 5개분야 15개사업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록 ('96.12. 3)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지역개발분야: 지역개발사업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울산공단 인근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마찰(울산광역시-지역주민, 환경단체)	·선암공원조성계획(유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극기훈련장, 골프연습장, 음식점, 휴게소)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97.12.30)	·환경운동연합 주장 일부수렴 보완 - 유희시설·산림욕장을 녹지로 보존 - 공원시설물 최소화 등
가장지구 지방산업단지조성 반대(경기도 오산시-지역주민)	·오산시 가장동에 275,000㎡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던 중 사업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반대('98. 1)	·『가장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유보 통보(시 → 주민) - 산업단지조성 사업재개시 주민과 협의후 처리하겠다고 통보
수원시 원천2택지개발사업 지연(대한주택공사-지역주민)	·수원 원천 2택지 개발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로 저렴한 택지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매탄동 일원 171,152㎡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95.8.30 경기도에서 사업 승인)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요구하는 주민(24가구 115세대)과의 마찰로 분쟁 - 기초실태 재조사, 하천부지 점유자에게 권리금 보상, 현실보상, 주차장 용지를 이주자택지로 조성, 선입주후 철거 등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97.11.1) 이주민 요구건을 부분 수용공사 착공 - 가수용시설 요구 세입자에게 가수용시설 설치 입주 - 행정대집행도중 파손된 가재도구에 대한 손실보상 등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구리시 토평지구 택지수용 주민반대(한국토지공사-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토평택지개발사업의 신우연립 등 418가구 토평지구에서 제척('94.10.5) - 토평지구택지개발지구 지정시 제외된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수용을 포기하므로 분쟁발생 · 제척연립 418가구는 '95년 10월경 시에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편입코자 하였으나 주민측에서는 자체개발을 위하여 제척되었으나 자체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도 구리시 도시재정비계획 입안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요청사항을 포함하여, 제척지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적극검토 예정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지정 반대(문화체육부-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3년부터 송탄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관광특구지정건을 경기도 및 문화체육부에 건의(신청) 해오던중(추진위원회 구성) · '96.10. 1 송탄관광특구지정예고를 하자 관광특구지정반대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특구 반대 유인물 배포 및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 '96. 11월 관광특구지정 철회 요청(고연복 외 3,44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반대표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송탄관광특구지정 면적조정 1.04km²→0.49km²신청(→ 경기도)에 따라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정고시('97.5.30) · '97.8.25 송탄관광특구위원회를 구성
원미주공 재건축에 따른 인근주민 피해보상요구분쟁(경기도부천(시행업체)-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86번지 일대 원미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95.12.28 사업승인, '96.8.10 착공)로 인한 인근주택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하자보수 요구(남측-김정남외 12세대, 북측-이무익외 5세대, 동측-김영애외 12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상 및 하자보수하기로 주민과 합의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은하마을 우신빌딩신축관련 층수 제한 요구(경기도 부천시(시행업체)-지역주민)	· 중동 신도시내 상업용지인 B-1로트상에 우신건설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축허가가 처리(95.8)되어 공사진행중 인접 아파트 단지(은하마을 대우, 동부아파트 632세대) 남측에 고층건물 건축에 따라 조망권 및 주거환경 침해를 사유로 건물층수를 낮추는 방안(9층→5층)으로 도시설계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방해 · 건축주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 부천시원의 부장판사 중재(95.11.4) - 건축주는 건물을 6층으로 조정 - 주민은 공사방해 및 민원을 제기치 않기로 합의
청양군 준농림지 행위제한 입법예고에 주민반대(충남 청양군-지역주민)	· 준 농림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입법예고하자 주민 및 새마을운동 지회 등에서 반대(지역발전저해 주장)로 조례제정이 유보됨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준 농림지역 행위제한 입법(건교부, 부분적 해제는 군수)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이설관련 주민반대(제주시-지역주민)	· '93.5. 2 이설개장된 제주시 건입동 533번지의 27필지내 현 제주시 민속 5일시장 부지는 도시공원지구로서 지역주민과 한시적 사용을 약속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시장사용이 어려워 영구적 부지로 5일시장을 이설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5일시장 이설 4개 후보지중 관광과 교통을 연계하는 5일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민속5일시장 이설추진위원회에서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인 도두동으로 부지를 선정(93.5.7)함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이 이의 제기 - '95. 3.18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을 제주의회 승인을 얻어 토지매입 과정에서 도두동지역 주민들이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반대	· 주민요구사항 수용(97.1.14) - 자생단체와 영세민에게 45개 점포 배정, 노지장터 150평에 대한 사용권 제공, 농로 확·포장 등
북제주군 환경면 체육관 건립부지 선정관련 분쟁(북제주군-지역주민)	· '96년 북제주군 환경면 체육관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 지역주민 갈등표출 - 환경면에서 자율적으로 부지를 선정토록 하였으나 유치경쟁으로 북제주군에서 선정해 주도록 위임되어 - 군에서 환경면 고산리에 선정하자 신창리·두모리 지역주민이 군의회 청원, BH, 감사원 진정서 제출 등 반대	· 주민반대 무마, 개발투자요구 거절 등으로 반대투쟁 중지 및 리행정 정상화 의결로 체육관 준공(98. 3. 4)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제주시 산지천복개건물 철거에 따른 주민반대(제주시-지역주민)	· 지난 '66년~'82년까지 설치한 산지천 복개건물노후로 인한 안전진단 용역결과 붕괴 위험성 예측되어('91.10) 재난관리법에 의거 경계구역설정 및 건물철거계획('95.8.24)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집단반대	· '92~'97년간 60여회의 대화·협의를 거쳐 건물주 건물보상 및 주거비지급 건물철거 공사 착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확대지정에 따른 주민반대(제주시-지역주민)	· '96. 8. 8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 및 주민열람, 공청회('96.8.19) 과정에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확대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당초 1.231km ² → 4.823km ²)	· 신양리 취락지 및 농경지 제외시키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 결정공고 (제주도-'97.2.14) - 면적 4,823km ² →4.177km ²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한 반대(전남 영암군-지역주민)	· '8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월출산 등산객에 대한 이용편의 및 관리(오물처리, 순찰, 산불감시등)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 '94.11 군의회에서 국내 케이블카 시설 실태조사 - '95.2 공무원과 의회대표단이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지역답사 등을 통해 설치키로 확정 · 이에 대해 월출산사랑공동연합회 등 주민들이 '96. 5월부터 자연환경과과 등을 주장하며 반대 - 이에 영남군에서는 해명자료 배포, VTR 홍보 - 군의회에서는 군민여론조사(찬성 78.1%, 반대 18.8%)	·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97.1.9)하여 범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군의회, 기자, 기관대표, 주민, 전문가로 39인 위촉)하고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확정 후('97.11.18) 시설추진중 - '98.1.19 용역완료 - '98. 4. 6 천황사지구 공원 계획변경서 신청(환경부)
광주서방지하상가 건설 주민반대(광주광역시-지역주민)	· '94. 9 광주시 의회에서 서방지하상가 조성요구에 '95. 4 광주시는 서방지하상가 조성방침 결정하자 - 인근 주민중 기존 상인들의 영업지장을 우려하는 반대와 도심 교통난 해소 등을 기대하는 찬성의 결으로 대립	· '96. 7. 9 주민투표 실시 - 투표율 : 53.6% - 찬성율 : 77.8% · '97. 2 공사 착공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해결내용
원미동 무궁화연립 재건축 반대(경기도 부천시-지역주민)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8-1번지에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로 기존 연립주택을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과정(97. 6. 3 사업승인)에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공사차량으로 인한 분진, 소음발생, 세대수증가로 인한 상·하수도 처리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방해 및 대규모 집단시위 발생(97.7~9) ·건축주는 주민저지대책위를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공사진행	·부천시에서 주민대표, 사업자 시공자를 초청 재건축 관련, 회의를 개최 중재(97. 8) -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및 각종 안전대책 강구 후 공사
가야산 골프장 개발관련 분쟁(경남 합천군(시행업체)-지역주민)	·'97. 가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가야면 일원에 (주)동아레포츠가 제시한 가야산 골프장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 가시화에 따라 분쟁발생 ·해인사 승려와 지역주민들은 홍수시 토사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농약 과다사용에 따른 수질 등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우려, 해인사의 이미 지 상실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지속적인 반대과정에서 '97. 가야면면과 군수와의 대화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 용도지역 및 가용토지 부족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이 불가하고, 주민의 생존권관련 집단민원 발생우려 ·'97.8. 동아레포츠에 골프장시설사업계획서 반려로 주민과의 분쟁해결
안산시 가사미공원 개발 반대(경기도 안산시-지역주민)	·지난 85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노적봉공원을 자전거도로겸 산책로 조성, 골프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다목적 시민 이용공간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해 안산시민 환경단체들 산림파괴라며 건설계획 반대	·성포동 주민 200명대상으로 시장주관 설명회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 계획된 산책로 폭을 2.5m로 줄여 달라는 요구 반영 및 조정수 식재기로 하고 조성중
전주시 서부신시가 지조성 주민반대 (전북 무주사-지역주민)	·'93년부터 전라북도 및 전주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 문화, 정보, 금융 등 성장기틀 마련할 미래형 신도시 건설추진 ·주민과 전주시의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 및 대한방직 공장부지의 동조성 신시가 지 편입에 대한 반대	·'97.10. 시가지조성사업 결정안을 입안요청 ·'97.11. 시가지조성사업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당초계획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되, 토지주의 의견을 풀어 환지개념에 의한 대물보상제 도입시행을 통해 민원 최소화

외국의 해결사례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분쟁명	분쟁개요	분쟁해결
뉴욕시의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에 관한 분쟁	· 미국 뉴욕주 Broome County의 Kirkywood지역은 0.227km ² 의 부지에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	· 소각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6백만달러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분쟁해결
Oak Park 부근의 쓰레기 매립장건설 분쟁	· 뉴욕주 북부의 Tomkins County는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코넬대학의 조사를 통해 Illinois와 Wisconsin에 걸쳐있는 Oak Park에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자 함	· 새로운 매립지주변지역에 보험을 실시할 것을 제안 - 사업상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냄
일본 동경도내 폐기물소각 시설건설에 관한 분쟁	· 일본 동경도내 무사시노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 무사시노시는 “청소년건설 특별시민위원회”를 구성, 시민위원회는 시설의 입지선정, 설계 및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건의서를 시정부에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소각시설의 입지선정에 성공
일본 동경내의 스기나미구의 소각장건설 분쟁	· 일본 동경의 스기나미구 청소공장은 1962년에 처음시작되고, 고토구에서 처리해왔으나, 쓰레기 처리를 거부하여 자체 소각장을 건설키로 함. 주민들은 반대동맹을 결성하고 사업결정 취소소송을 제기	· 1972년 지사와 주민반대동맹간 합의삭서를 마련, 동경도와 민관대표로 구성된 간담회는 5개소의 후보지를 지정했으나 해당지역주민이 실행사로 저지 - 동경지방재판소의 중재로 1974년 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분쟁해결
세이머(Seymour)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 분쟁	· 세이머지역 주민들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유클레어시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불만등을 이유로 매립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	· 1978년 3월 “공공중재사무국 자문위원회”가 노사분규 중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경제학자에게 중재를 의뢰해서 이 중재자의 도움으로 분쟁해결
동경도내의 메구로(目黒)구 청소공장건립에 대한 주민과 동경도간 분쟁	· 1973년 동경도는 메구로(目黒)구에 청소공장 건설에 대한 협조요청. 1981년 메구로 청소공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은 건설철폐를 주장하며 반발	· 동경도는 주민과 함께 “건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건설후에는“운영협의회”로 개칭하여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 및 의견교환으로 상호신뢰감을 확보. 공원, 주민복지센터, 구민센터설치
다카라즈가시 청소공장건립에 관한 시와 주민간의 분쟁	· 1978년 계획하여 1981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지연되다 1984년 주민의 동의를 얻어 320통 처리규모로 1988년 완공함	· 주민동의시 3,000km ² 의 토지에 주민 편의시설인 교육종합센터등을 건설해 주고 이외에도 주변의 도로정비, 하천공원 정비등을 해줌으로써 동의를 이끌어냄
뉴욕 브르클린의 쓰레기소각장 건설분쟁	· 1984년 뉴욕 브르클린 지역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소각장 건설을 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한 분쟁발생	· 분쟁해결을 위해 뉴욕 과학아카데미의 기술전문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부측 대표들이 공개토론을 거치고, 주민들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
일본고베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관련 분쟁	· 1974년말 시의 쓰레기소각시설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계획결정이 고시되자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시설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 반대	·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구자치단체대표들의 내부분열, 시의회 중재안에 대한 주민과 시정부의거부, “기술위원회”구성을 둘러싼 논란, 시의 공사 강제착공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중단사태 - 최종적으로 대책위원회를 탈퇴한 3개 구자치단체 중심으로 시정부와 직접협상을 거쳐 분쟁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분쟁명	분쟁개요	분쟁해결
武藏野市の 소각장입지 선정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京都는 1966년 하루의 소각량이 900톤인 소각장을 다카이도 동삼정목에 건설한다고 발표. 11월 17일 소각장에 정지의 주민들은 지주 13명과 학부모, 교사회, 상점회, 일반주민들이 모여 '소각장설치 반대기성동맹'을 결성하고, 都에서 발표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라는 운동을 시작, 분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2월에 사업결정취소 소송의 심의가 동경지방법판소에서 재개되고, 2개월후 화해권고가 내려졌으며, 분쟁발생후 8년만에 화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짐
고마에시 재활용센터 건설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마에시 내에 쓰레기 시설을 정비할 것을 검토하고, 6월 용지매수예산이 가결되어 시청부근의 준공업지를 리싸이클센터 건설예정지로 구입. 시민부재의 결정이라며 반대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검토과정에서 시민과 행정은 보다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행동을 함. 입장차이를 인정하면서 때로는 함께 맘을 흘림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며, 시민전체의 이익에 입각하여 좋은 결론을 이끌어 냄

원자력 및 에너지시설

분쟁명	분쟁개요	분쟁해결
미국 텍사스주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한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텍사스주의 Reeves County에는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감옥이 추가 입지됨으로써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죄수들을 90명이나 고용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500만달러의 임대료를 내게됨. 이 지역은 감옥이 입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핵발전소 폐쇄 요구를 철회
룩카쇼촌의 원자력 사이클 시설 입지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4월 전기사업연합회는 아모리縣 지사에게 원자력사이클시설 입지를 요청했고, 7월 입지지역을 룩카쇼촌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찬성파의 주민들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대파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거세지기 시작함으로써 분쟁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12월 총장선거에서는 추진파가 낙선하였지만, 1991년 2월 아오모리현 지사선거에서 추진파가 당선되어 룩카쇼촌에서도 추진파가 승리하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추진파가 당선되어 분쟁해결

·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사례집 1 ·

그린벨트관련 분쟁

분쟁명	분쟁개요	분쟁해결
Surrey지역의 그린벨트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rey 카운티카운슬은 1980년대 까지 개발제한정책을 고수. 그러나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카운티 카운슬은 그린벨트 정책과 함께 개발의 필요성 인정 · Surrey 카운티는 그린벨트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최대개발 가능계획 수립 · 이 과정에서 카운티와 중앙정부간의 개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운티 카운슬은 그린벨트를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해제하는가에 대한 문제 논의 · 그린벨트내 토지들은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고 기본계획에 맞추어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제기 · 결과적으로 유희지에 대한 카운티카운슬의 권한은 줄어들고, 그린벨트 해제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음으로써 분쟁해결

하천관련 분쟁

분쟁명	분쟁개요	분쟁해결
라인강 염분오염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장의 입지.가동에 의한 피해 비용의 다국간 부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분담 조정 - 네덜란드(35%), 프랑스(60%), 스위스(4%)
미시시피주의 하수배출에 따른 수질오염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리주는 시카고의 하수가 인공수로를 통해 플래인즈(Des Plaines)강으로 배출되고, 시카고의 하수배출이 미시시피강의 물을 오염시킨다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미주리주가 주장하듯이 하수배출이 장티푸스균을 증가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미주리주가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신청한 배출금지요구'를 기각함으로써 분쟁마무리

외국사례 자료: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199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함께 풀어가
는 지역갈등, 삼성경제연구소, 1997;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
경제연구소, 1996.